



학내 성폭력의 실태와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세미나

일 시 : 1998년 9월 28일 (월) 늦은 4시

장 소 : 동아대학교 통일터

(인문관 101 강의실)

주최 : 부산 성폭력 상담소 · 5기 부산경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경남대학교 총여학생회, 경상대학교 총여학생회,

경성대학교 총여학생회, 동아대학교 총여학생회,

부경대학교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 울산대학교 총여학생회,

인제대학교 총여학생회 건준위

창원대학교 총여학생회

세미나를 준비하며

무더운 여름을 지나 청명한 가을 하늘이 유난히도
가슴을 시원하게 합니다.

이 가을에 부경여대협과 부산성폭력상담소가
학원내 성폭력 규제학칙에 관련한 세미나를 가지는 것은
대학내 만연한 성폭력의 위험과 실태를 알려내고
이를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모두가 합의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폭력의 문제는 사회전체의 문제이기에
지역 여성단체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고 싶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의지가 학교측과 일반 사회 안에
더 많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합니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 소장 신 혜 숙
5기 부경여대협 의장권한대행 임 옥 선
5기 마창여대협의장

주제발표

▶ 대학생 성의식 설문조사 분석

발표자 : 김미화 / 신라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과정

▶ 학내 성폭력의 개념과 실대

발표자 : 이재희 / 부산성폭력 상담소 사무국장

▶ 규제 학칙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안

발표자 : 박영진 / 동아대학교 총여학생회 회장

자료	집글실는순서
----	--------

내부 성폭력의 실태와 성폭력학칙제정을 위한 세미나

1998.9.28. 토 16:00

학내성폭력의 실태와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세미나

- 4 학내성폭력의 개념과 실태
- 8 성폭력학칙제정을 중심으로 한 대응방안
- 11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 규정 (안)

참고 자료

- 14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
- 14 성폭력의 발생원인
- 17 학내성폭력의 실태와 사례
- 23 학내성폭력의 예방과 근절 대책
- 26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의 의의와 목표
- 27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 30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
- 38 보론 1 : 학내성폭력 피해 상담
- 41 보론 2 :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 47 보론 3 : 데이트 강간

도움을 주는 단체

학내 성폭력의 개념과 실태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세계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로 예외는 아니고 오히려 그발생율이 세계 2~3위를 달리고 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의 94%가 성폭력 위협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으며 여성의 스트레스의 1위가 성폭력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났다. 3분에 1건 풀로 발생하는 강간은 물론이고 추행이나 성적회통등 성폭력이 많은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다. 최저 1세 영아부터 최고 75세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여성 중에 성폭력을 겨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여성들의 일상적 행동까지 제약하고 있다. 성폭력이 두려워 여자끼리는 여행도 못 가고,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밤늦게 극장이나 공원에도 못 간다. 여자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할머니가 될 때까지 두려움과 몸조심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구나 지성의 전당으로서 우리사회의 도덕적 지표라 할 수 있는 대학내에서의 성폭력실태가 심각한 수위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해 발표된 한 통계에 의하면, 학교에서의 성폭력경험은 무려 34%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로 그러하다는 증거는 지난해 5월 동아대학교 총여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폭력 경험이 21%라는 통계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최근 대학내에서 교수에 의한 여제자 성폭행 사건이 간간이 법정 투쟁으로 표면화되는 현실에서

도 볼 수 있다.

특히 그 성격상 권력관계가 관철되는 학원 성폭력은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표면화 되지 않는 것까지 합한다면, 실제의 학원 성폭력은 상당수에 달할것임은 분명하다. 이에 부산대학교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폭력 규제학칙]을 제정 했으며 이는 앞으로 부산 경남의 대학에 일반화될 추세이다.

그러나[성폭력 규제학칙]이 제정된다면 [성폭력 규제학칙]으로 학원은 성폭력 안전지대로서 완전히 보장할 수 있을까?

성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는 [성폭력 규제학칙] 제정이 전에 우선 무엇보다도,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먼저 성폭력에 대한 개념과 발생원인, 그에 대한 통념과 학내성폭력의 개념 및 실태를 살펴보고 그 대처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1. 성폭력이란?

1) 성폭력의 개념

한마디로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성폭력은 강간 뿐만 아니라 성적회통,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노출, 아내 구타,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음란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 컴퓨터게임등)제작,판매 등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2) 성폭력의 발생원인

① 성차별과 성의 이중윤리

남성 : 사회적 지위, 부소유, 힘, 용기, 성적자유허용

여성 : 차별적 지위, 의존적 존재, 순종, 인내, 순결강요

② 왜곡된 성문화와 성교육의 부재

- 생물학적인 성지식 교육만의 성교육

- 왜곡된 성 정보의 범람 성의식의 왜곡화

- 성의 상품화, 음란비디오, 음란출판물

- 퇴폐적, 가학적, 폭력적인 성의 미화

- 향락업소의 팽창

③ 여성의 낮은 지위, 불평등한 사회화

성폭력은 성폭력에 대해 관대한 사회, 계층간의 격차,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발생율이 높다. 여성, 남성으로 인식하 기보다는 대등한 인간으로서의 정체감을 기르고 더불어 발전하는 동반자적 인격체로 대접해야 한다.

④ 폭력의 용인, 폭력이 미화되는 사회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우리사회는 성폭력에 대해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생각들을 마치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념들은 너무나 큰 위력을 발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유발 책임을 가해자에게는 남성의 성충동은 본능이라 어쩔수 없다는 관대함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해자를 합리화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잘못된 통념과 인식은 가해자들의 죄의식조차 상실시키며 법적 제재 또한 없게 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①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②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다. → 성 관계란 남녀간에 애정이나 친밀감 등을 나타내는 의소 소통과 상호교감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강간은 여성의 뜻

과는 관계없이 일어난 행위이며 힘과 물리적·심리적 강제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관계가 아니라 성적인 행위를 매개로 한 폭력이다. 이는 엄연히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이다.

③ 대부분의 강간은 커먼한 골목에서, 낯선사람에 의해 서,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 실제 로는 가해자의 집이나 피해자의 집에서 80%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

④ 여성들의 심한 노출은 성폭력의 주범이다. → 성폭력을 예방하는 최선책은 여성이 조심하는 일이다? 이는 최소한의 임시방편으로써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것일뿐 적극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 강간범은 많은 경우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흥기로 위협하기도 한다. 그리고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느껴 저항하기보다는 무력해지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저항해도 강간을 피할 수는 없다. 흔히 “흔들리는 바늘에 실을 편 수 있느냐?”라고 비유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피해 상황에서 여성은 꽉 잡혀 있는 바늘과도 같은 상태이다.

⑥ 강간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2. 학내성폭력의 특성 및 대처방안

1) 학내 성폭력의 개념

학교와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강간,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통신, 등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① 성적 행위의 수용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의 조건이 되는 경우

② 성적 행위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성적 행위가 피해자의 학업생활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저하 및 불쾌한 학업분위기를 조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2) 학내성폭력의 특성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성폭력의 실상이 은폐된 채 피해자의 입을 다물게 하고 있다. 특히 학내의 성폭력(그 중에서도 교수와 제자간)문제는 학교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① 교수에 의한 성폭력

- ㄱ. 당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통과, 진로결정 등을 미끼로 성폭력을 하는 경우
- ㄴ. 성폭력에대한 거부로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통과, 진로결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ㄷ. 수업실, 연구실, 교수실 등에서의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학업 능력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ㄹ. 신체 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② 학생들 간의 성폭력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생활 환경적인 의미를 많이 지닌다.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은 사회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면에서 일반적인 성폭력의 유형과 대체로 유사하다.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개인의 특성이나 각 집단의 문화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 ㄱ. 공공모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유형
- ㄴ. 모르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ㄷ. 개인적인 남녀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3) 학내 성폭력의 실태

지난 1994년 8월 서울대 교수에 의한 조교 성폭력 사건 공동 대책 위원회가 서울 대학교에서 실시한 학내성폭력에 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3%가 성폭력을 경험하였다. 학내에서 성폭력의 가해자는 선배가 49%, 학교 친구가 44%, 후배가 3%등 대부분 아는 사람이 차지했다. 성폭력을 경험한 장소로는 과방, 동아리방, 학생회실

등이 15%, 뒤풀이 장소 39%, MT-야유회 4% 등을 차지하고 있고 공동체 모임에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성폭력은 여성다면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국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8,000여건(95년 이전)에 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 성폭력이 30%, 근친성 폭력이 18%, 직장내 성폭력이 11%, 데이트 강간 5%, 기타로 위의 현실을 입증해 준다. 상담소 개소이래 교수의 성폭력 상담, 선후배, 동료간의 성폭력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고 전국 각 대학은 현재 학원내의 성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7월 말까지만 해도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며 전국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되집어볼수 있었던 학원내 성폭력 사건은 여러건 발생했다.

학원내의 성폭력 사건은 그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빈도는 높지만 철저히 은폐되어 감추어진 상태이다. 이것에 관련된 자료도 미비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국은 피해 학생만 개인적 자구책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수업을 옮기거나 피해 다니는 소극적 대응 방법으로 졸업식 날까지 견디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학교 당국에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고 해결해 주기를 학장, 총장에게 요구했지만,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사건을 축소시키고 동료 교수만을 보호하고 두둔할 뿐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의 실상에 학교당국, 교직원,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기회를 준 것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 학내성폭력의 예방과 근절대책

이제 더이상 성폭력을 흥미거리로 들 수는 없다. 가해자가 기분전환으로 혹은 호기심으로 한 성폭력은 실수가 아닌 큰 범죄행위이며 피해자 전체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는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을 대학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① 제도적인 대책(학교)

- ㄱ.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실시
- ㄴ. 성폭력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학내의 시설 정비.
- ㄷ.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정' 등의 규제안이나 학칙으로 학내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과 가해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ㄹ. 학내 성폭력신고, 상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② 개인적 대책

- 단호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불쾌감을 즉각 공식적 언어로 표시한다.
- 직접적인 거부의사가 힘들면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
- 자신이 보고 느낀점을 포괄적으로 기록한다.
: 자신에게 가해진 성폭력으로 손상된 자신의 감정을 기술한다.
- 원하는 후속조치를 설명한다.
- 시정하지 않을 시 학과장, 학장, 총장에게 알릴 것을 경고한다.
- 같은 피해자, 목격자를 찾아낸다.
- 학생회, 여성단체,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상담한다.

③ 학부모의 역할

- 학장, 학생처를 방문하여 문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문제가 성의있게 해결 안될 시 총장을 만나 불만을 표시한다.
- 학부모가 불참시 변호사를 대동하여 팔을 참석시킨다

④ 집단적 예방대책

- 성폭력에 관한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 성희롱 및 성폭력의 정의, 사례를 정식 문서화한다.
해도 좋은 일, 해서는 안되는 일의 목록 작성
- 성폭력 발생시 해당교수에게 항의한다.
- 학과장, 학장, 위원회에 정식 항의서를 제출한다.
- 지침서, 기숙사 프로그램, 공개강연, 게시판, 특강, 공개토론, 대학 신문 등에 성폭력 관련 사항을 홍보하여 여론화에 주력한다.

⑤ 데이트 강간의 예방과 대책

- 평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 데이트하는 도중에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다.
- 상대나 상황에 따라 성적행동의 한계를 변동시킬 수 있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성행동을 강요할 수 없음을 믿는다.

⑥ 피해상황에서의 모면책

- 성폭력상황에 처했을 때 공포가 아니라 분노로 대응해야 한다.
 - 자신의 행동지침을 결정한다.: 저항이나 포기나
 -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그 즉시 행동한다.
 - 여러 가지 전략을 함께 사용한다.
: 소리지르기, 힘으로 저항하기, 도망치기
- ⑦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
-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아니오는 거부로 받아들인다.
 -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이라도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성적 행동은 상대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서로의 성욕구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 암전히 있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성폭력이 이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대학에서부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대학이 성폭력박물관이라는 오명을 벗고 우리사회에 성폭력을 근절하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그 대책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성폭력 제정을 중심으로 한 대응방안

부경여대협 성폭력 학칙제정 소위원회

1. 왜 학칙제정인가?

지난 수 년 동안 각 학교 총여학생회에서는 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았다. 각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억압의 역사이자 사회적 병폐 중의 하나인 성폭력이 '신성한 학원'에서도 여지없이 그대로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학교 특유의 권력관계 속에서 더욱더 심각하게 은폐되어 있음을 알게 하였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이러한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가 대부분 여학생이며 성폭력문제가 여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말살하는 여성억압과 인권유린의 문제임을 인식하여 핵심적인 투쟁사안으로 학내 성폭력 추방운동을 진행해 왔다. 성폭력 사건 발생시 여성운동단체와 각 학교 총여학생회에서는 사건의 직접적인 해결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특별 강연 형태의 성교육·성폭력 피해 예방교육, 퇴폐향락문화 추방운동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여 왔다. 오랫동안 사회문제화되지 못했던 성폭력 문제가 지난 몇 년사이에 대중적으로 쟁점화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노력들이 큰 뜻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또한 많았다. 성폭력이 범죄행위라는 것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현실속에서 우리사회의 남성중심적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성차별, 여성의 성상품

화·성적 대상화, 퇴폐향락적인 성문화, 성폭력에 대한 잘 못된 인식, 성교육의 부재 등 직접적인 원인 외에도 갈수록 커지는 계급계층별 격차,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 풍토, 군사적 폭력문화 등에서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양산하고 있으며, 대학이라는 공간 역시 그것을 교정해 주지 못한 채 사회 전반적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대응 방안 없는 소규모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한 활동들의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각 학교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은 그 노력의 정도에 비해 일회적이고 단기적이며, 피해자를 보호 및 가해자의 처벌에 있어 어떠한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강제성을 띠기가 매우 어려웠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순결이데올로기와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잘못(?)이 더더욱 많은 논란거리가 되는 현실때문에 피해자가 엄청난 용기와 인내력을 가지고(경우에 따라 자신을 다시 한 번 희생하면서) 대응하지 않으면 사건의 해결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해결방식은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안별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으며 논의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더구나 성폭력이 개인의 잘못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학내 성폭력에 대한 학교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해결의 주체로 나서게 할 근거도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학 내 성폭력이 근절되고 그것이 대학을 넘어 사회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이고 지속적인 형태의 성폭력 근절 대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최근 2~3년 사이 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으로 그 방향이 모아지게 되었다. 성폭력 학칙제정은 학내 성폭력에 대한 학교 당국의 책임성과 해결의지를 명백히 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사건해결의 과정, 성폭력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명시함으로 해서 성폭력 문제 해결에 실질적 강제력을 발휘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또한 성폭력 문제를 학칙에 규정함으로 인해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을 개인에서 사회로 이전시킴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여 학우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성폭력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방향성

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은 여학우 뿐만 아니라 남학우 또한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성폭력의 대상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 남성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로 학교의 상급생이, 그리고 성인의 경우 군대고참이나 직장 상사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97년 5월 경 남대 총여학생회의 설문조사의 결과에도 조사대상 남학생 중 5%가 ‘의도적이며 불쾌한 신체적 접촉’, ‘성적편견이 담긴 언사’ 등의 가벼운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폭로’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성폭력은 단순히 성적충동을 참을 수 없는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일으키는 범죄가 아니라 대상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권력관계의 산물이다. 그리고 성폭력에 의한 피해는 누구에게나 치명적이다.

성폭력의 가해자 역시 성폭력의 피해자이다. 성폭력을 행했다는 사실은 가해자 인격의 파탄을 증명한다.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잠재적인 성폭력의 가해자로서의 모든 남

성은 오히려 가련한 존재이다. 대부분의 남성은 따뜻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교육받지 못했고 여성을 소통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속물화된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도록 교육받았고 그럼으로써 그 자신 역시 속물화되어 버렸다. 성폭력의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모든 인간이다. 따라서 성폭력 근절 운동은 피해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 물론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 성적분할, 성적배제를 바탕으로 성억압과 성폭력, 인간관계의 기형화를 구조화시키고 있는 현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이며 대안적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의 주체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성폭력 학칙제정 운동은 여학생 대중이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여성주의적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적 성문화는 많은 문제들의 본질을 왜곡해 왔다. 성폭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남성은 성적 충동을 자제할 수 없다’ ‘강간은 여성이 끝까지 반항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폭력은 피해 여성이 뭔가 성폭력을 당할만한 일을 했기 때문’ 등등의 잘못된 신화들과 성폭력에 대한 성기중심적 사고는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데 있어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가해자의 행위는 정당화 되거나 동정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윤색된다. 여기에 성폭력 사건 자체에 대해 대중이 가지고 있는 선정적 이미지가 이를 더욱더 부채질한다. 결국 사건은 본질적 문제를 벗어나게 되고 피해자가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당했는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히려 피해자의 2차, 3차 피해를 낳게 되어 결국 사건 해결의지를 상실하게 만든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남성중심적인 담론을 깨뜨리고 새로운 여성주의적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신화가

1) 이 단락은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에서 실시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청회에서 ‘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의 방향성 모색에 대한 제언’의 내용을 인용, 일부 수정하였다.

깨어지는 과정이어야 한다.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고통이 더 많이 이야기 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험이 더 중요시되어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유린한 가해자의 인격파탄이 논란거리가 돼야지 피해여성의 순결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성폭력은 아무리 가벼워도 범죄행위임이 널리 인식되어야 하며, 성폭력을 유발하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성기중심의 물신주의를, 퇴폐향락문화와 이를 부추기는 미국의 저질 문화를 반대하는 담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피해여성은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속에서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지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서는 안된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총여학생회의, 여학생의 주동적인 담론형성 과정을 통해 기존의 거대담론을 새로운 담론으로 대체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은 대중운동' 이어야 하며 총여학생회가 진정한 '여학생 대중조직'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은 단순히 학칙제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이 운동은 과정이 중요하다. 성폭력 학칙 제정은 단지 학칙 제정을 학교에 요구하고 학교와 협상해 나가는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각 학교 총여학생회에서 많은 경우 운동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가져 가지 못하다 보니 - 그것이 정권에 의한 탄압이든 주체의 문제이든 간에 - 눈에 보이는 결과 및 성과에 급급하여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사업을 '운동'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해야 할 사업'으로서만 바라보게 되면 더더욱 그렇게 된다.

학칙제정운동은 운동의 주체가 학우 대중이라는 명확한 인식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 성폭력 학칙 제정은 총여학생회, 더 엄밀해 말하자면 총여학생회의 몇몇 간부가 여학우들을 위해 '해주는 일'이 아니다. 활발한 대중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어오고 이러한 대중적 합의가 학우들의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집중적

으로 모아진 대중의 힘으로 학칙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 학칙의 제정은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서만이 그 의의를 갖는다.

총여학생회가 여학생들의 주동적인 힘을 바탕으로 하는 독자적인 대중운동으로서 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을 가져갈 때 여학생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쓸데 없는 걱정'이나 '잔소리'나 '배부른 소리'가 아닌 하나의 정치력이 있는 목소리, 하나의 집단적 힘으로 작용해 나갈 수 있다. 여학생들의 대중적 논의와 합의를 하나로 모아서 정치력있는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바로 진정한 여학생의 자주성을 집단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며 총여학생회가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조직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진정한 대중운동으로서의 성폭력 학칙제정 운동을 통해 총여학생회는 전체 여학생들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힘있는 여학생 대중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우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중의 힘을 어떻게 모아나가고 자신들의 요구가 어떻게 관철되어 나가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런 승리적 경험을 토대로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학우들이 주인주체로 서 나가는 과정이다.

4. 나가며

성폭력 학칙제정 운동에 있어 한가지 명심할 것은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바꾸어가는 운동이지 단순히 여성권익향상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남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이처럼 심각하고 성문화가 왜곡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미제국주의의 저질 퇴폐향락문화의 유입과 제국주의의 성침탈의 결과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우리의 과제와 결코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여학생운동가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인 전체 운동에 대한 복무와 골간운동과의 연대라는 화두는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을 대중운동답게 벌여내어 자주적 총학생회가 여학우들의 대중조직으로 올곧게 섬으로서 풀릴 수 있는 문제이다.

학원내 성폭력에 대한 특별 규정(안)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00대학교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모든 성폭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여 올바른 성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 특별법과 형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와 성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모두 행위를 뜻한다.

제 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00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수, 교직원,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① 교수는 정교수와 시간강사, 족탁자까지 모두 포함한다. 학생은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을 교직원은 일용직까지 모든 근무자를 포함한다. 또한 외인 교수와 교환학생도 포함한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해자와 피해자 중 일방이 위 ①의 적용이 명백할 경우에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③ 본 조항의 적용시 기준시기는 사건 발생시이며 이후 쌍방의 지위 변화는 그 적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제 4조(피해자의 보호)

①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도,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게 과외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징계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 5조(학교의 의무) 학교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그 외 제반활동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 2장 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

제 1절 성폭력 상담실

제 6조(설치) 학교는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고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제 7조(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성폭력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②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인 가정 생활 및 학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안내하는 일
- ③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일
- ④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는 일
- ⑤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 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및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담당 운영하는 일

제 8조(구성) 상담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담실장과 상근 상담원은 1인 이상을 둔다.

- ① 상담실장과 상근 상담원은 지역사회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성폭력 상담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되 총여학생회의 추천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상담실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2절 조사위원회

제 9조(설치) 성폭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 10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담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흐선하며 위원은 본교 교수 또는 교직원 3인, 학생 대표 3인으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생대표는 총여학생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 회의는 매 학기 1회씩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성폭력 상담실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④ 회의는 제작위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 3장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처벌

제 12조(상담)

① 상담실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상담이나 신고를 받으면 성실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상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피해가 성폭력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2. 반윤리적, 반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제 13조(결정 및 처리)

① 위원회는 제12조에서 회부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 본 안에 의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 봉사, 배상 등의 징계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결과를 학교당국에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4장 징계

제 14조(교원의 징계) 교원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교원 징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해임, 직위해제,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한다.

제 15조(직원의 징계) 직원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00대학 직원 징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해임, 직위해제,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한다.

제 16조(학생의 징계) 학생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학칙 제0조의 규정에 따라 제적, 무기징학, 유기징학, 근신 등의 징계를 한다.

제 17조(동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위하여 정신적인 혐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끼쳤음이 명백하였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징계를 한다.

제 18조(징계위 소집) 학교는 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9조(징계 결과의 공고) 위원회는 사건이 처리된 후 일주일 이내에 조사결과와 징계요구안을 학교는 징계 결과를 일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 5장 보조

제 20조(재정) 위원회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임금 및 수당 등 경비는 학교 예산으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제 21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와 상담실에서 소관업무별로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14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

14 성폭력의 발생원인

17 학내성폭력의 실태와 사례

23 학내성폭력의 예방과 근절 대책

26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의 의의와 목표

27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30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

38 보론 1 : 학내성폭력 피해 상담

41 보론 2 :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47 보론 3 : 데이트 강간



5기 부산경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

1.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

1) 협의의 개념(기존 형법에서 성폭력)

: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법규정 어디에도 없으며, 풍속을 해하는 죄의 장(형법22장)과 정조에 관한 죄의 장(형법32장)에서 규정한 경우를 주로 일컫는다. (강간과 성적추행 등)

2) 광의의 개념([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성폭력)

: '성을 매개로하여 가해지는 모든 폭력(Sexual Violence)', 즉 성을 매개로하여 이루어지는 무형, 유형의 강제력의 행사,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이다. 이는 전통적인 법적 의미의 성폭력인 강간, 추행에서부터,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추행(특별법 제11조 1항), 언어,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특별법 14조)까지 포함한다.

3) 최광의의 개념(최근 세계여성계의 규정)

: '여성을 차별하므로써 가해지는 모든 폭력(Gender Violence)'으로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제약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는 엄밀하게 법적인 개념은 아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성폭력의 개념이나 범위는 다의적이다. 1)의 경우에서처럼, 기존의 성폭력은 강간, 추행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법적으로도 강간만이 성폭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2)의 성폭력 특별법은 직접적인 성폭력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 언어사용과 같은 다소 애매모호한 성희롱 역시 위법행위라는 것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신체를 아주 음흉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한 번 이상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또 그렇게 한다면, 이 역시 성폭력에 해당되며 형량 역시 주어진다. 이러한 법적인 규정이 지금은 비록 스웨덴에서만

통용되지만, 성폭력 발생을 세계 3위라는 불명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성폭력 특별법]에도 이러한 규정이 첨가될 것은 분명하다.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성폭력 특별법]은 특히 직장이나 학교 내 성희롱이 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가지고 고용법상의 규율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과, 더 나아가서는 여성의 인간화, 인간의 존엄성의 이념을 실질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성폭력의 발생원인

1. 성폭력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배경에서 살펴보면

성범죄, 성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사회구조적 요인들로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치·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상호작용적 요인, 사회통제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보았다.

1. 정치·경제적 요인

특히 부녀 인신매매범의 경우 절대다수가 돈을 벌기 위해 이러한 범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볼 때 가장 근본적인 배경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의 증대이다. 특히 일부 상류층의 부당한 축재와 소외계층의 증대는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입장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여러 돈벌이 중에서 하필이면 인신매매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성의상품화 및 이로 인한 3차 산업, 특히 향락산업의 이상 비대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향락산업이 번창함으로써 이것이 좋은 돈벌이가 되며, 매춘여성에 대한 수요는 증대되나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자발적인 매춘

여성으로서는 부족하게 되어 유인·납치 등에 의한 인신매매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셋째, 허위광고, 구직자 유혹에 의한 인신매매가 많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 산업에 유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드러내주는데 이것은 여성들의 취업기회 부족, 저임금, 주변적·보조적 노동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여성들은 보다 나은 수입을 위해 3차산업, 성산업에 유인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여성에게 보다 나은 취업기회를 개방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은 철폐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성범죄, 성폭력을 단속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폭력을 행사함으로서 폭력을 양산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 할 수 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대구에서의 경찰에 의한 강간사건, 96년 연대에서 나타난 공권력에 의한 여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는

첫째, 남녀불평등 구조와 성별 분업을 들수 있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화 한다고 하고 성의 상품화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지만 성의 상품화가 남성의 상품화로 나타나지 않고 여성의 상품화로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남녀 불평등한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가부장제의 문제이다. 위에서도 말한 남녀불평등 문제는 가부장제의 문제와 직결된다. 가부장제는 종종은 가족 내에서의 가부장의 지배와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넓게는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 전반을 가리킨다. 이러한 가부장제는 기존의 성별 분업을 강화·재생산함으로서 남녀 불평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가부장제를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에 따라 깨끗한 여성과 타락한 여성으로 여성을 이분화하고 가부장제 밖의 타락한 여성들은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여성들을 분열시키고 가부장제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셋째, 교육제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입시위주 교육제도는 불가피하게 탈락된 부적응 학생들을 양산하고 이는 문제청소년의 구조적 생성이라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강간의 43%가 청소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범죄분석, 1986 2/4) 학생범죄가 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3. 문화적 요인

첫째, 지나친 물질 만능주의 때문이다. 사람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비인간적, 반인륜적 상흔, 인간을 수단화하는 목적과 수단의 전도현상 등은 모두 물질 만능주의가 지나쳐서 인간의 존엄성, 인권에 대한 의식부재 현상을 낳았다.

둘째, 가부장적 남성문화의 도덕적 타락을 지적할 수 있다. 남성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강간, 성폭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토가 있는데, 이는 여성을 성에 대상으로만 보려는 풍토, 돈으로 여성을 사는 것을 문제시 하지 않는 풍토, 여성을 이분화하는 풍토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중적 성 규범의 문제이다. 남성은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워도 당연하다는 외도문화·매춘문화가 허용되는 반면, 여성에게는 정조가 중시되는 이중적 성규범이 문제이다. 특히 여성에 대해 육체적 순결만 중시하는 잘못된 정조관념이 있는데 이는 가정 파괴범, 인신매매범에 의해 피해를 당한 여성이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여 폐인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볼 때 매우 잘못된 정조관념으로서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은 우발적 범죄가 아님에도 여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몸한번 벼렸다고 자포자기하는 현실에는 문제가 있다.

넷째, 물질만능주의, 수단과 목표의 전도와 관련하여 비뚤어진 이기주의를 지적 할 수 있다.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남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가족 이기주의생각이 인신매매, 성폭력과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끔 하는 요인이 된다.

4. 상호 작용적 요인

이러한 문화적 요인들은 가족, 매스컴, 제도교육등에 의해 강화 재생산된다. 먼저 가족에 의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성별 불평등이 재생산 되고, 남녀 차별적 성 역할 구분이 습득되며 매스컴의 영향으로 성폭력, 여성비하 등 성차별적 스테레오 타입에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인간 교육, 윤리교육, 공동체 의식 교육이 부재한 입시위주의 제도교육을 통해 경쟁 위주의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가 양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사회구조적, 사회과 정적 요인 이외에 주요한 요인으로서 사회통제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5. 사회 통제의 문제

사회통제의 문제는 법과 현실의 괴리라는 문제가 있다. 법적 차원에서 여성 및 성범죄와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접 관련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가족법의 문제점은 가부장제를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여성에게 불리한 여건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폭력 특별법의 문제점은 첫째, 가해자보다 피해자에 대해 부당하게 초점을 둔다. 둘째, 확증의 특수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유죄성립에 문제가 있으므로 유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친고죄의 적용으로 제 3자가 고발해서는 성립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신고율이 더욱 낮다는 것이다. 다섯째,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집행의 문제점이다.

II. 한국사회의 역사적,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보면

우리사회는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다. 그 대상이 자식이든 동네 꼬마든 이웃

집에 잘 아는 소녀이든 제자든 가릴 것 없이 다른 어떠한 법적 · 인간적 규제력을 마비시킬 만큼 심각한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도덕적 규범을 뿐리채 뒤흔들어 버리는 이러한 극히 일탈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그것이 대중적 관심과 분노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모순과 병폐가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된다.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인들을 살펴볼 때 ‘남자는 늑대’ 라든가 ‘원래 인간은 동물’이라는 말에서와 같이 남성의 성을 극히 생리적이고 억제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거나 오히려 강한 성은 추구되어야 할 남성성임을 조장해온 가부장적인 이중적 성 윤리를 지적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동안 인간의 역사적, 문화적 발전 및 진보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인간의 존재형성과 그 도덕 및 의식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동물과는 다른 ‘노동을 하는 이성적 존재’라는 새로운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성폭력의 문제가 우리사회에 극히 심각한 상태로 만연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본질과 그 상을 혼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위기에 처한 인간은 원시적인 동물적 인간이 아니라 장구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도덕적 의식과 규범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적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부장제의 성 윤리 기준에 의한다면, 성폭력문제의 심각성이 단순히 인간의 동물성에 의해 촉발되는 죄악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구체적, 현실적 계기도 마련해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확대된 시야와 진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심각한 성폭력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우리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들 수 있다.

첫째, 60년대 초반이후의 한국의 급격한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은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변동을 초래했으

며 이 과정에서 윤리, 특히 성 윤리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성 윤리, 자본주의의 성 윤리, 진보적 성 윤리 등이 혼재되어 있음으로 해서 성 윤리규범 그 자체가 해체되어 버릴 지경에까지 이른 상황에 있다. 절대적인 육체적 순결을 여성에게 강요했던 전통적 성 윤리가 붕괴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이 현재의 성폭력 만연의 문화적·의식적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그 동안의 경제발전이 성장을 최우선의 과제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분배의 문제를 도외시하여 부의 편중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낳았다. 특히 향락, 퇴폐산업이 자본주의적 이윤추구의 한 장으로 번창하면서 성이 상품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품화된 성과 향락의 문화가 사회의 저변에 뿌리깊게 자리잡으면서 성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셋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사회의 발전에 따른 광범위한 상품화, 즉 인간의 소외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광범위한 상품화와 사회구조의 분화 및 전문화는 어느 층의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자신이 행하는 하루종일의 일을 보다 한정된 영역의 일로만 좁혀 놓았으며, 이는 자신의 일이 그리하여 자신의 존재가 도대체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러한 소외에 대한 보다 손쉬운 탈출구로 선택되는 것은 본능적인, 동물적 욕구의 분출이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성의 상품화와 성의 대상화를 또한 요구한다. 다시 말해 우리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과행적 변화과정은 이러한 성의 상품화와 물화경향을 기속화 시켜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성폭력은 구조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내 성폭력의 실태와 사례

한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의 94%가 성폭력 위협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으며 여성의 스트레스의 1위가 성폭력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났다.『강간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추행이나 성적 회통등 다른 성폭력도 많은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최저 영아부터 최고 64세까지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여성 중에 성폭력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여성들은 실제로 성폭력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990년 신문지상에 발표된 바와 같이 성폭력은 이제 한국 여성이 받는 스트레스의 첫번째 원인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일상적 행동까지 제약받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두려워 여자끼리는 여행도 못 가고,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밤늦게 극장이나 공원에도 못 갑니다. 여자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할머니가 될 때까지 두려움과 몸조심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모두 부당한 피해이며 이것 자체가 성폭력입니다.』

지난 1994년 8월 서울대 교수에 의한 조교 성폭력 사건 공동 대책 위원회가 서울 대학교에서 실시한 학내성폭력에 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3%가 성폭력을 경험하였다. 학내에서 성폭력의 가해자는 선배가 49%, 학교 친구가 44%, 후배가 3% 등 대부분 아는 사람이 차지했다. 성폭력을 경험한 장소로는 과방, 동아리방, 학생회실 등이 15%, 뒤풀이 장소 39%, MT-아유회 4% 등을 차지하고 있고 공동체 모임에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성폭력은 여성이면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국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8000여 건(95년 이전)에 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 성폭력이 30%, 근친성 폭력이 18%, 직장내 성폭력이 11%, 데이트 강간 5%, 기타로 위의 현실을 입증해 준다. 상담소 개소 이래 교수의 성폭력 상담, 선

후배, 동료간의 성폭력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고 전국 각 대학은 현재 학원내의 성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7월 말까지만 해도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며 전국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되집어볼수 있었던 학원 내 성폭력 사건은 여러건 발생했다.

학원내의 성폭력 사건은 그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 빈도는 높지만 철저히 은폐되어 감추어진 상태이다. 이것에 관련된 자료도 미비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국은 피해 학생만 개인적 자구책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수업을 놓기거나 피해 다니는 소극적 대응 방법으로 졸업식 날까지 견디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학교 당국에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고 해결해 주기를 학장, 총장에게 요구했지만,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사건을 축소시키고 동료 교수만을 보호하고 두둔할 뿐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의 실상에 학교당국, 교직원,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기회를 준 것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수와 제자사이

▶ 성폭행 사건의 접수와 총여학생회의 대응 사례

(97년 부산대) - 시간강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1997년 11월 27일 무용학과 한 여학우가 국문과 시간강사에게 성희롱에 준하는 행위를 당했다고 하며 이것을 총여학생회에 문의해 왔다.

<사건경위>

사건경위는 무용학과 한 여학우가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하여 재시험 여부를 묻고자 시간강사에게 연락을 취하고 시간강사인 권모강사와 수업을 마치고 문창회관 앞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여 길을 가던 중에 시간강사와 만나게 되었다. 권모강사는 시험칠때가 마땅찮다면 차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길래 차에 타게 되었고 차안에서 몇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요즘 많이 외롭다. 자신은 결혼을 하더라도 외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자신은 기혼자라고 밝힘) 요즘 남녀관계에서 성관계는 다반사다.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친구라고 하는데 자신은 성관계를 나눈 사이가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등 성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함.

그러다가 "들어서 조용히 시험칠 만한 장소는 여관이 좋은데, 안되겠지?"라는 말까지 함.

차에서 나와서 결국 연구실로 가서 재시험을 치르고 난 후, 권모강사가 "리포트도 안냈던데, 내가 리포트 소스를 줄테니 애인을 소개시켜 달라. 네가 되어주어도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지냈으면 좋겠다."는 등의 말을 함

재시험 얘기와 리포트 얘기를 다른 학생들에게도 했느냐는 확인을 하고, 앞으로 만날때는 다른 학생들에게 얘기하지 말 것을 당부.

그 여학우는 여러 가지 짐짓한 마음에 시간강사에게 받은 리포트 소스를 돌려주고자 같은과 언니에게 그 일을 부탁함.

애기도중 그 언니도 예전에 그 시간강사와 관련된 석연찮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사건해결과정>

위의 얘기에 나오는 같은과 언니가 그 강사에 대한 석연찮은 얘기를 그 여학우와 나누고, 그것에 분노해 무용학과 몇 명의 친구에게 얘기를 했고, 그 강사의 강의시간 끝에 들어가 교수를 제지하고 그 반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개하고 비공식적인 서명을 받았다.(진실규명과 강사자격 박탈에 대해) 몇시간 후에 무용학과 학우(피해여학우 포함) 5~6명이 총여학생회에 찾아 왔다.

우선은 이문제의 해결에 대해 법(학칙)적인 부분을 따져 보기 위해 법대 학우와 피해여학우, 그 여학우의 과학우들과 함께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그리고는 그 학우들이 받아온 서명이 불충분 했으므로 사건경위와 진실규명, 강사의 공개사과의 내용을 담은 서명지를 다시 작성해 당

시 서명을 했던 학우들을 과학우들이 만나가며 서명을 다시 받았다.

서명작업과 함께 사건개요와 진실규명, 강사의 공개사과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자보를 학내에 부쳤다.

이후 국문과 학과사무실에서 연락이 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강사와 학과장, 다른 교수 한 두명, 총여학생회회장, 총학생회회장, 피해여학우, 과학우들이 몇차례 만남을 가졌다. 이 속에서 강사는 자보에 자신의 이름이 바로 실린 것, 사건에 대한 대부분의 부인 등으로 항의를 했고,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해 이를만에 자보를 철거하고 계속 면담과 논의중이라는 대자보를 다시 붙였다.

몇차례의 만남 속에서 강사는 사건에 대한, 특히 피해 여학우가 성적 모욕감을 느낀 부분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계속 부인했으나 어쨌든 자신의 잘못이라는 얘기를 하며 여학우에게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기로 일정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일정 정도의 잘못은 여학우에게 있다는 강사의 말이나, 의도는 없었으나 이렇게 사건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강사의 태도에 피해 여학우가 2차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억울함이나 사건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의 관점을 틀어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다시 강사와 학과장을 만났다.

총여학생회회장, 총여학생회부회장, 법대 학우만이 강사를 만나는 것으로 하고 만나려 갔으며 공개사과문을 총여학생회측에서 작성해 제시하였고 일이 계속 번질까 두려웠던 강사와 학과측은 도장을 찍었다. 공개 사과문과 사건 해결, 오류지점에 대한 평가,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 성폭력 규제학칙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대자보를 냄으로써 이 사건은 최종 마무리가 되었다.

〈사과문〉

지난번에 있었던 무용학과 한 여학생과의 “성희롱 시비 대자보건”에 대하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몇가지 평가지점들>

가장 큰평가지점으로 남는 것은 바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올바른 관점을 틀어줘는 부분이다. 초기에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의 관점을 틀어줘지 못하고 강사의 신변문제나 의도가 있었니 없었니 하는 문제 등으로 총여일꾼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함으로써 사건해결 과정에서 몇번이나 번복되는 과정을 겪었어야만 했다.

피해자 중심의 관점을 틀어줘지 못함으로 인해 피해여학우가 철저하게 보호받지 못했다. 가해자와의 면담과정에서 교수와 학생이라는 신분의 수직적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때로는 여학우를 공격하는 식으로 때로는 희유한은 식으로 되기도 하며, 강사가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여학우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등의 행동을 보임으로 인해 피해 여학우의 2차적인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커졌다. 그러므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에 대한 평가지점이 커졌다.

또한 학우들의 공분이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정리에 대한 논의가 죄총우들함으로 인해서 공개화된 이야기에 대한 책임성을 계속 담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총여학생회가 선거를 마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였기에 외부의 함께 모으려 했던 것이 총여입장정리의 죄총우들하는 것으로 잘못 나타났다. 실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부족인 법대 학우, 총여학생회 등과 함께 해결하려 했으나 이것이 공분을 한데 모으고 힘을 뭉쳐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점과 중심을 틀어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학교가 하나가 되어 성폭력을 해결하고자 했던 의지는 높이 살만하다.

마지막으로 과학우들이 돋고자 하는 열의가 아주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토론을 함께 하다듣지 일을 함께 분공하는데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과학우들의 참여를 제대로 이끌어 오지 못했고, 피해여학우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작업이 부족했다.

학생들간의 성폭력

▶ 진주 경상대 성폭력 사례

<사건 개요>

불문과96학번 한 여학우가 98년 9월 25일 4교시 수업 마치고 나오다가 동아리 선배인 가해자를 만남.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 여학우를 다짜고짜 강의실로 끌고감.

〈평소 피해자는 가해자와 1년정도 알고지낸 사이이며 피해자는 이미 자신의 과선배를 비롯 여러 명이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었으며 평소 여학우의 허벅지를 만지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고 이상한 선배라 여겼다. 가해자는 대학원 진학을 위해 수년 동안 학내에 머물러 있었으며 외국어교육관 웹실에서 교재대여 일을 함. 가해자는 평소 피해자의 동기나 친구에게도 초면에 손잡고 안고 다른 여학우를 껴안고 등을 더듬고 했다고 한다. 외국어교육관에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면 외국어교육관은 가해자를 불러 타이르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우가 커피를 뿜겠다며 나가자 강제로 끌어안았으며 놀라 뿌리치는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했다. 피해 여학우는 가해자를 밀어내고 강의실을 급히 뛰어나옴.

몇 시간 후 과선배와 다시 가 봤더니 그 자리에는 없었고, 피해자는 충격으로 며칠 학교를 나오지 못하다가 28일 과선배와 가해자를 만나러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어떻게 아직도 여기에 있느냐고 말하니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피해자가 경찰서로 같이 갈 것을 요구하자 가해자는 사과했으니 이제 됐다며 자리를 떠남.

피해자는 가해자가 두 번다시 이런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엄격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으며, 가해자는 사과를 했으면 되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학교나 가해자나 외국어교육원에서는 외부로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학교의 명예실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결국 가해자는

외국어교육원은 물론이고 학내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처하였다.

▶ 창원대 예비대학에서 있었던 성추행사건

이 사건은 98년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창원대 야간강좌 학생회(이하 야강)의 새내기 미리배움터(이하 새티)에서 발생하였다.

<사건경위>

-2월 22일 합천 야암산의 야강 새티 장소에 총학생회장과 총학간부들이 인사차 방문. 이날밤(23일 새벽 1~2시경) 사회2부장이 술에 취해 숙소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여학우 2명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르어가 여학우의 몸을 더듬었다. 피해자는 자다가 팔로 뿌리쳤지만 계속 몸을 더듬어서 또 한번 뿌리침. 그런데 옆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나 옆에 있는 친구의 몸을 더듬는다는 생각이 들어 이불을 걷어 올리고 가해자를 보았다. 가해자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돌리고 있다. 누구냐고 묻자, “사무국장을 찾으려 왔다.”고 대답했으며 다시 묻자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라고 말하고 나가버렸다. 1~2분정도 멍하니 앉아있다가 나가보니 총학생회장과 같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 총학 간부인 줄 알게 됨.

-25일 피해자가 야강회장에게 성추행 사실을 이야기 함.

-28일 야강회장은 총학생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가해 혐의자인 총학 사회2부장과의 면담을 요구. 이후 총학의 답변은 없었음.

-3월 3일 야강회장이 총학회장을 만나러 총학으로 감.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건의 정황과 내용을 다시 말하고 총학회장에게 설명함. 야강의 입장은 밝히고 사회2부장과의 만남을 다시 요구. 사건에 대해 알아본다고 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

-3월 6일 3일 이후 총학에서 아무런 연락이나 해명이 없자 야강회장이 총학으로 전화를 함. 총학 부회장에게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사회2부장을 만날 것을 또다시 요구.

- 7일 오전 총학 사회2부장과 사회국장이 야간강좌학생회로 옮겨 야강회장과 면담을 가짐. 총학 사회2부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사회2부장은 성추행 사실을 부인. 야강은 3월 9일까지 사회2부장의 중집사퇴, 공개사과 자보를 넣 것을 총학과 사회2부장에게 요구.

총학은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공개적인 맞대응을 하겠다고 밝힘.

- 10일 9일까지 총학생회의 아무런 답변이 없자 사건에 대한 내용과 야강의 요구를 적은 대자보를 붙임.

- 10일 저녁 8시 중앙운영위에서 총학측은 야강이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성추행 관련 자보를 냈다고 주장하며 반발. 총학도 맞대응하겠다고 밝힘. 서로 진상규명을 위해 11일 만나자고 합의

- 11일 총학생회의 반박자보(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여학우의 말만 듣고 야강이 총학생회를 매도하였으며, 이는 총학생회에 대한 훼손내기이다. 그리고 사회부장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다라는 요지의 내용.)

- 11일 저녁 야강회장과 야강운영위 5명, 야강집행부 4명, 총학부회장, 사회2부장 외 중집2명, 총학사회 2부장 등 아리 선배3명 등 총 17명이 사건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며 면담을 함.

- 13일 피해자와 총학사회 2부장의 진술서. 그리고 11일 있었던 면담 과정에서 증명되었던 사실들을 중심으로 야강에서는 다시 자보를 내어 사건의 진위를 알리고 야강의 요구를 분명히 밝힘.

- 13일~17일 사이(날짜불명) 총학의 사과자보(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사건을 빨리 처리하지 못한점에 대해 사과한다. 이에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회2부장의 사표를 수리함. 진상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사회2부장을 가해자 또는 범인이 아니라 똑같은 피의자로 대했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내용.)

- 17일 본 사건을 총여학생회에 일임.

- 4월 1일 피해자와 가해자 1차면담.

- 2일 '창원여성의 전화'에 방문상담.

- 3일 피해자 '창원 여성의 전화' 방문상담

- 6일 가해자 '창원 여성의 전화'를 방문상담. 모든것을 시인하고 사과의사를 밝힘.

- 8일 피해자(2명), 가해자, 총여학생회 부회자, 상담선생님이 같이 한자리에서 가해자가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사과 공개자보, 한달에 두번 상담소 방문과 지킴이 봉사)

3월 24일 총여학생회로 보내온 어느 여학우의 편지

<성추행 이대로 넘겨서는 안된다.>

안녕하세요? 총여회장님, 부회장님!

제가 총여에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이제까지 파문이 되어 왔던 총학 사회2부장 성추행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켜보았으며, 야강과 총학의 행동 또한 잘 지켜보아 온 학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간결하게 끝내려 하더군요. 어쩜 다른 많은 학우들은 하루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랄지도 모르지만, 창원대에 다는 한 학우로서 이 사태를 이처럼 넘길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과 친구들과 함께 3월 21일 저녁 7시 30분경에 학교앞 아카데미에서 저녁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앉았던 테이블이 전화기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우연히 어떤 남학우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무심코 앉아 있다가 통화하는 것을 듣고 그가 전 사회2부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은 저희가 앉았던 테이블의 바로 뒤편이라 그들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와 그의 일행(남학우 5명)이 한 이야기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말하자면, 전사회2부장 월 "일단 제가 잘못을 했죠... (중략) 저희 동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배님들이 꿋꿋하고 당당하게 학교에 다니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잠시후 곁에 있던 한 남학우가 큰 소

리로 말하기를 “야, 너 그 여자 좋아했나?”(이 말은 전 사회2부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입니다.)라고 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그들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 때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야경에 전화를 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성추행사건의 경과를 물었습니다. 야간강좌 학생회 간부의 말에 의하면 사회 2부장이 사과를 하기로 했고, 이 사태를 총여에서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식사를 마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분노를 머금고 그 자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창원대 다니는 한 여학우로서, 더 넓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를 이렇게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성추행 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여학우들은 이 사태의 진실된 규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될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처럼 몇몇 남학우들은 전 총학 사회2부장처럼 ‘강력하게 부인하면 된다’는 식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한 여성의 인권이 한낱 술자석에서 이렇게 유린될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며 총여에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하여 이제까지 있었던 성추행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학직에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땅히 있어야 하며, 이것으로서 여학우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1998년 3월 24일

▶ 도서관 열람실 성추행 사건(S대)

도서관 열람실의 칸막이 있는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자리의 남자가 나의 팔에 손을 갖다 대었다. 나는 그때 소매있는 반팔을 입고 있었다. 처음에는 실수로 손이 닿은 줄 알고 팔을 약간 움츠렸을 뿐 그대로 공부를 계속

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2-3번 나의 팔에 손을 갖다 대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다가 나의 어깨를 안으려고 하였다. 내가 다시 몸을 피하였더니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내 엉덩이를 만졌다. 나는 일어나서 학번을 묻고 학생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그 사람은 다시 밖으로 나가 버렸다. 나는 그 사람의 책을 쟁겨들고 도서관을 나오면서 그 사람의 자리에 5시에 장터국수에서 만나자고 메모를 남겨놓았다. 그 이후 나는 총학생회로 달려가 상담했고, 5시에 그 사람을 만나 총학생회로 가서 진술서를 받고 대자보를 통해 학내에 사건을 공개했다.

▶ 음란가요를 후배들에게 가르친 사건

모 과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에 어떤 남학생 선배 한명이 후배들에게 음란가요(속칭 삽신가)를 후배들에게 가르쳐줬다. 화가 난 신입생 여학생이 전체 뒤풀이 자리에서 과학생회와 그 남학생에게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학생회에서는 항의를 받아들이고 학생회 차원에서 신입생들에게 사과를 하고 더 이상 그런 노래를 부르지 말 것을 지시했다. 여학생과 학생회가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모임 문화를 바꾸어 나간 좋은 사례이다.

▶ 선배의 데이트 강요사건

신입생 때의 일이다. 과선배가 ‘착하다, 귀엽다’며 나에게 접근해왔다. 혼자있으면 음료수도 사주고 점심도 사주며 호의를 보여왔다. 그러던 가운데 선배의 눈치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둘만의 시간을 갖자며 교제를 요구해왔다. 때로는 불쾌한 표현(언어적)을 하고 신체접촉을 시도해왔다. 겁도 나고 해서 피하게 되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 과내의 여학우 상당수가 같은 일을 겪었다. 그 가운데 한 친구는 정신적 피해가 커서 일상적 생활을 못하였다.

▶ 컴퓨터 음란물을 이용한 성폭력

-전사실의 누드사진 PARK프로그램

전공공부와 레포트 작성 등을 위해 전산실을 이용하는

기회가 많다. 일을 마치고 park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화면에 음란한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완전히 벌거벗은 여자의 모습이 사진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이 선명하고 세밀하게 화면에 나타난다. 그럴때마다 민망하면서도 많은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전산실 컴퓨터에 음란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에게 분노를 느낀다.

〈이 행위는 포르노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보임으로써 불쾌감을 유발하는 명백한 성폭력 행위이다. 매체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서인지 (즉 잡히거나 들릴 위험이 없기 때문) 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행위가 요즘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992년 6월 PC 통신에 음란물이 게재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여중생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매체는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의 행동이 성폭력이 아닌가 살펴보아야한다.)〉

▶ 언어적 성폭력

1학년 때였다. 어느날 저녁 좌석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동문선배와 옆자리에 앉아서 집에 가게 되었다. 그 선배는 모임이 있었는지 조금 술을 마신 모양이었다. 몇 가지 일상적인 대화가 오간 뒤 산배는 자신의 연예 경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곧 애인과의 육체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입을 맞추면 어떻고, 어디를 만지면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민망할 정도로 자세히 늘어놓았다. 애인과 성관계를 가진 이야기도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너는 해봤나?, 해보고 싶지 않느냐?, 가르쳐 줄까?” 따위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날은 별 일 없이 넘어갔지만 그 뒤로 그 선배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는 동문회를 나가지 않았다.

▶ 화장실 성추행

여자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곳은 헛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낮에도 불을 켜 놓아야 할 만큼 깁깝하다. 어느 한 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무언가 기분이 이상해 위를 쳐다보니 시커먼 남자의 얼굴이 칸막이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여학생은 소

리를 질렀고 그 남자는 급히 도망쳤다. 비명소리에 주워사람들이 뛰쳐나와 도망가는 남학생을 잡아 신분을 조사하였다. 경영대 88학번이라고 밝힌 그 학생은 볼일이 급해 남자화장실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잠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의심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학교측은 남학생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무마해버렸다.

학내 성폭력 예방과 근절대책

성폭력 사건을 바라볼 때는 성폭력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더욱 중점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성폭력의 해결을 위해서는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 접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성폭력 문제를 사회적 폭력임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학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거나 총여학생회(그외 학생회)에서 사건을 접수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하는 것이 대자보 선전이다. 대자보가 불자마자 학우들은 벌떼같이 모여들어 유심히 살펴본다. 그러나 학내의 심각한 성폭력의 사건을 알려내고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 홍미거리로 전락이 되기도 하고, 대자보가 떨어지고 나면 또 그만이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유형의 성폭력이 학내 어디에선가 일어나게 된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의 반복을 끝내자. 남학우가 기분전환으로, 혹은 호기심으로 자행하는 성폭력이 작은 일이 아닌 바로 큰 범죄이고, 그것도 성을 매개로 한 야비, 악랄한 폭력이며 그 고통은 피해자의 전체 삶을 좌우지 할 수도 있는 엄청난 범죄라는 분위기를 학내에서 만들어 나가자. 그리고 이러한 학내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고리를 최대한 찾아서 예방하고 급기야는 학내에서 성폭력이 사라질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자.

1. 제도교육

여성학 강의는 남녀 학우들이 함께 여성학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고 열린 장에서 지속적으로 토론하면서 실천적인 대안을 찾을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

전공교수의 채용, 여성학의 세분화, 여성학의 필수과목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여성학 강의가 있고 학우들의 호응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의가 한, 두과목이 대부분이고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거나 전문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강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과목도 여성학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있었으며 있던 강좌가 폐지된 경우도 있었다. 여성학 강좌가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서는 6-7개의 강의가 개설되어 있어 내용면에서 세분화가 잘 되어 있고 강사의 경우에도 총여학생회에서 추천한 강사로 하는 등 모범을 보이고 있다.

2. 자치교육

시기 적절한 강연회, 공청회, 토론회 등으로 올바른 성의식, 성문화를 만들어 가자.

여성학 강의의 전문화와 세분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학회, 동아리 혹은 학생회의 교육활동 속에 당연하게 여성학 관련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도교육의 보수성과 경직성을 대신하여 올바른 교육을 실현할 대안이 바로 자치교육이다. 성폭력의 대부분이 선배나 친구에 의해서 과, 동아리방, 뒤풀이 장소, MT장소 등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체 학내의 성의식과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실한 인간관계로 끈끈히 묶인 공동체로 여기는 곳에서, 성폭력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곳에서 도리어 많은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성문제에 관한 세미나와 토론을 하고서도 뒤풀이에서 술 한잔 먹고나면 음담폐설-음란가요를 부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반성해 볼 문제다. 공동체 문화속에서 건전한 성의식, 올바른 성문화를 정

착시켜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3. 신입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건전한 성의식의 교양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식 중의 하나가 대학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 입학교육이다. 미국 등 외국의 많은 대학들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성폭행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는 피해 방지 차원도 있지만 가해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성폭행에 대한 학교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데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처음 대학의 문턱에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은 동료학생(이성)을 자신의 성적만족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주체로 볼 수 있는 올바른 성문화, 대학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강력히 학교측에 요구했을 때 충분히 수렴될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4. 성폭력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학내의 시설을 다시 한번 정비하자.

실내 복도나 학내 곳곳의 가로 등을 더욱 밝게 하고 개수도 늘려야 한다.

-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의 교정은 여학우들의

밤길을 더욱 두렵게 만들고 있다.

- 야간에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늘려야 한다.

- 여학생 화장실을 성추행이 불가능하도록 고쳐야 한다.

- 칸막이 너머로 옆칸을 넘볼수 있게 되어 있거나, 바닥 부분이 뻥뚫려 있어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화장실 문고리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경우 등 성추행 발생의 제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 학내 규찰대 등 학내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

5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정' 등의 규제안이나 학칙으로 학내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과 가해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대의 설문조사에서 학내 성범죄에 대한 징계강화는 신고소 혹은 상담소 설치, 성교육 강화와 함께 성폭력 방지책으로 매우 높은 지지를 보였다. 그 정도에 있어서도 학생의 경우에는 퇴학과 정학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더 강한 징계를 원하는 파면이 73%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강한 처벌은 가해자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도 강력한 억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많은 사건에서 가해자는 학생 혹은 학교측에 신원이 알려지거나 징계를 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아직 학교 학칙내에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규제안도 없을뿐더러 학교 당국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인색한 형편이다. 학생이든 교수든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학교가 아직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남성 중심적 성의식 속에서 '혈기왕성한 남성이 실수로 해 볼 수도 있는 일'이라는 입장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학교는 성폭력 사건을 가능하면 모른체하거나 알게되더라도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성폭력은 결코 우발적인 충동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한 번 시작한 성폭력적인 성적 언행은 무의식중에 혹은 성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게 된다. 가해자는 어김없이 이전에도 그러한 유형의 성폭력을 자주 행해왔음이 여러 사례를 통해 나타난다. 어떤 가해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기가 싫을때면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건드려서 스트레스를 풀고 무료함을 달랠다.'는 진술을 꺼림 없이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성폭력 가해자 대부분이 상습범이고 한사람의 행동이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수 있음을 알기에 학내 성폭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한 징계가 징계를 위한 징계에만 머무르는 것을 막기위해서 가해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학생 생활 연구소 등의 기관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6. 학내 성폭력신고, 상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많은 학교 총여학생회에서 핵심공약 사업으로 학내 성

폭력 신고, 상담전화나, 상담소 설치를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전국에 학내 성폭력 신고, 상담기관이 제대로 있는 곳이 거의 없다.

학교 당국은 아직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면서 발생했을 때는 사건을 무마하기에 급급한 학교당국의 현실.

이러할 때 누가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때 당당히 신고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는가? 또 이렇게 덮어 두기만 할 때 학내 성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임이 당연하다.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주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피해를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내의 성폭력 실태를 알려나가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여론화 시켜나갈 때 성폭력 예방에 무관심한 학교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7. 예방과 대책

1) 개인적 대책

단호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불쾌감을 즉각 공식적 언어로 표시한다.

- 직접적인 거부의사가 힘들면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

- 자신이 보고 느낀점을 포괄적으로 기록한다.

: 자신에게 가해진 성폭력으로 손상된 자신의 감정을 기술한다.

- 원하는 후속조치를 설명한다.

- 시정하지 않을 시 학과장, 학장, 총장에게 알릴 것을 경고한다.

- 같은 피해자, 목격자를 찾아낸다.

- 학생회, 여성단체,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상담한다.

2) 학부모의 역할

- 학장, 학생처를 방문하여 문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문제가 성의있게 해결 안될 시 총장을 만나 불만을 표시한다.

- 학부모가 불참시 변호사를 대동하여 딸을 참석시킨다

3) 집단적 예방대책

- 성폭력에 관한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 성희롱 및 성폭력의 정의, 사례를 정식 문서화한다.
해도 좋은 일, 해서는 안되는 일의 목록 작성
- 성폭력 발생시 해당교수에게 항의한다.
- 학과장, 학장, 위원회에 정식 항의서를 제출한다.
- 지침서, 기숙사 프로그램, 공개강연, 게시판, 특강, 공개토론, 대학 신문 등에 성폭력 관련 사항을 홍보하여 여론화에 주력한다.

4) 데이터 강간의 예방과 대책

- 평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 데이터하는 도중에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다.
- 상대나 상황에 따라 성적행동의 한계를 변동시킬 수 있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성행동을 강요할 수 없음을 믿는다.

5) 피해상황에서의 모면책

- 성폭력 상황에 처했을 때 공포가 아니라 분노로 대응해야 한다.
- 자신의 행동지침을 결정한다. 저항이냐 포기냐
-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그 즉시 행동한다.
- 여러 가지 전략을 함께 사용한다. - 소리지르기, 힘으로 저항하기, 도망치기

6)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

-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아니오는 거부로 받아들인다.
 -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이라도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성적 행동은 상대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서로의 성욕구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 암전히 있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의 의의와 목표

부산대학교는 98년 9월에 성폭력 규제 학칙을 제정하였다. 이는 앞으로 부산·경남의 대학에 일반화될 추세이다. 도아대에서도 학칙제정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나 학생들과 교수간의 갈등으로 인해 제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에서 {성폭력 규제 학칙}을 제정하는 것은 학내의 성인식을 바로잡고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며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올바로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학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힘으로 {성폭력 규제 학칙}을 제정하는 것은 성을 매개로 한 사회적 폭력을 목인하는 동조자이며 공범자에서 성을 매개로 하는 사회적 폭력을 깨부수어 나가는 주체로 전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성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당사자이지만 당사자 주변 그리고 가족, 사회에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여학우들은 성폭력으로 인하여 주체성과 자주성이 짓밟혀 왔으며 항상 성폭력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아닌 여학우들 또한 자신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짓밟혀 왔다.

한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그리고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을 하면서 공론화된 과정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올바로 찾아가도록 하는 것, 자신의 삶에서 주인된 삶을 그리고 여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당당하게 펼쳐 나가야 한다.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의 목표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성폭력 규제 학칙}의 제정으로 학원 구성원들의 성에 대한 주체성과 자주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의 의의 첫째, 대학내 만연해 있는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내는 것을 뛰어넘어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

둘째, 대학내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시켜 대학에서 성폭력을 근절시켜 나가는데 있다.

셋째, 성폭력 사건에 수수방관인 학교행정에 사건의 예방, 문제점 해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에 강제력을 두는 것이다.

넷째, 대학가에 만연해 있는 제국주의의 저질 퇴폐향락문화 침탈을 막아내고 민족자주문화를 세워내는데 있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대중운동이다. 그 주체는 학우대중이다.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쟁점화시켜 내면서 그 중에서도 여학우의 논의와 합의를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힘으로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아래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모범답이거나 정형화된 형식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성폭력 학칙제정 운동을 진행하면서 경험속에서 정리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시행된 부분이 적으므로 그 성과나 오류, 한계를 지적하기는 어렵고 다만 제안의 형식인데, 그다지 창조적인 고민도 많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2학기 중반을 접어드는 시점에서 성폭력 학칙제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각 학교 총여학생회의 입장은 그다지 반영하지도 못했다. 다만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대중운동으로 성폭력 학칙제정 운동을 가져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소 어슬픈 내용이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안하는 것이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여성해방운동인 동시에 학원자주화투쟁이다.

성폭력은 그 피해의 가능성만으로도 학원에서 주인주체로 서나가고자 하는 여학우의 자주성을 억압하고 파괴한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은 여학우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되고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 많은 경우 자신의 활동을 포기하거나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폭력 학칙 제정은 바로 여학우가 학원에서 주인주체로 당당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의 의무이다. 따라서 학교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가해자에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러한 피해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책임인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 및 예방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대학당국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사안과 마찬가지로 학교는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은폐시키기 위해 급급하다. 따라서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단순한 입법투쟁을 넘어서 성폭력 근절에 대한 학교당국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실현함으로써 여학우가 학원의 주인주체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학원자주화투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여학단위의 학자투쟁은 전문적인 고민과 주체가 없이 그 고유영역을 가지지 못하고 여학우의 기본적인 복지문제를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성폭력 학칙제정 운동은 여학우의 직접적인 이해와 요구를 실현해 나가는 여학운 고유의 학자투쟁영역을 개척해가는 동시에 그 투쟁과정에서의 전략적 경험의 축적과 학자 핵심일꾼을 발굴해 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대중사업 흐름을 잡아야 한다.

총여학생회에서 1년에 하는 사업은 많다. 출범식, 여성주간, 여성캠프, 남녀공학, 대동제, 등등. 그러나 학우들은 이런 기획사업을 중심으로 총여학생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중심으로 바라본다. 총여학생회가 어떤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어떠한 투쟁을 진행하였을 때 '아 올

해 총여학생회는 이런이런 사업을 했구나'라고 인식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도 총여학생회가 이벤트 회사가 아니라 대중운동을 하는 대중조직이라면 1년의 사업을 고민할 때 '행사'가 아니라 '운동'을 중심에 놓고 1년의 흐름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기획사업을 하는 것은 투쟁사안을 좀더 학우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지 행사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핵심 투쟁 사안 한 두가지를 중심으로 그 해의 모든 사업의 흐름을 잡아야 한다.

물론 총여학생회가 역량만 된다면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과 형태의 운동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좋겠지만 지금의 총여학생회는 그러한 역량이 되지 않으므로 집중과 분산을 잘 해야만 한다.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분산할 것은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핵심일꾼의 발굴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여학일꾼 누구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에 대한 학습과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논의는 운영위를 중심으로 한 여학단위 전체에서 함께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많은 학습과 조사,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정책을 생산하고 실무를 담당할 핵심 주체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핵심인자가 많이 부족한 여학단위에서는 1-2명의 핵심주체를 세우는 것도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을 하고 싶은 단위라면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정책이든 성폭력특별위원회장이든 성폭력 학칙제정을 중심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은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한사람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해서는 안된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기간이 더 걸리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학우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인자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많이 제기되는 방법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성폭력

학칙제정이나 여학생 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각 단위 여학부장(단대 여학생회장), 기층 여성문제학회나 소모임에 함께 하기를 제안하자. 일반 학회라도 관심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안을 해보는 것이 좋다. 학칙제정을 위한 인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도 학우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자보나 학교신문에 모집광고를 낸다.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도 이미 학우들은 성폭력 학칙 제정의 주체가 될 준비를 하고 있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실천단을 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울대 사회대의 경우 총투표를 통하여 사회대 학생회칙에 성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치약 제정을 위한 실천단을 사회대 학생회에 제안하여 2주간 활동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생회와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공유하고 이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 후에 기층에서 소규모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자들을 남기는 의미있는 결과를 남겼다.¹⁾

학우들의 논의와 합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 방법상의 문제제기

설문조사, 자보, 공청회, 자료집, 신문, 성폭력 학칙제정 소식지 등을 통해 끊임없이 학내성폭력 문제를 재점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각 기층단위(과학생회, 과학회, 동아리 등)에서 성폭력과 학칙제정에 대해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데 집중한다. 특히 성폭력이 발생한 단위에서는 반드시 강제적으로라도 기층의 논의를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재점화 과정이다. 결과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과정임을 명심하자.

이러한 재점화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 제기

예) 직접적 사건의 해결과정 속에서 설문조사, 사례모집, 여학우 개별 면접을 통해 나타난 학내 성폭력의 실태

1)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의 방향성 모색에 대한 제언',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 공청회' 자료집, 여성연대회의, 1998

와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다.

2.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성폭력 학칙 제정의 필요성 제안

1) 조직체계 내 논의과정 형성 및 합의

총여학생회 운영위, 확대운영위, 과발전위원회 등의 조직체계를 통해 각 단대 운영위, 중앙운영위, 확대 운영위, 전학대회, 학생총회로 이어지는 골간체계를 통해 특히 총여학생회의 조직체계를 통한 논의 형성은 어렵더라도 시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속에서 과여학부장이 주동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여학생회 조직체계를 강화하는 성과를 남기는 중요한 과정이다.

2) 자보, 공청회, 자료집, 소식지 등의 선전매체와 행사를 통한 논의 형성

3) 연극, 상황극, 퍼포먼스, 만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논의 형성

4) 학우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

예) 성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 단대별 이동 꽃붙이기 설문게시판, 직접적인 여론조사(성폭력 근절대책에 대해 00학우 1000명에게 묻는다 등), 학생투표 등

5) 학우들 사이에서 생점화되는 모든 문제에 총여학생회의 입장을 가지고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3. 학칙제정

1) 성폭력 학칙제정안과 그 외 성폭력 근절 대책 방안의 마련 : 학칙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마련할 수도 있지만, 법학과 관련 학생회나 학회 등에 의뢰하는 것도 그 과학우들을 학칙제정의 주체로 세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 외 요구안도 같이 제시하는 것이 좋다

2) 학칙제정안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설문게시판, 서명운동 등으로 논의, 합의 도출

3) 정리된 안을 학교에 요구안으로 제출. 반드시 학교와의 논의 구도도 함께 요구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4) 학교의 답변이나 학교와의 논의 과정을 모두 공개화 하며 가능한한 학교와의 공개토론회도 갖는 것이 중요하

다.

5) 학교가 학우들과 합의된 요구사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학우들이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투쟁방식을 모색하여야 하며, 그것으로 학교를 압박해 들어가야 한다.

예) 서명운동, 학생투표, 여학생총회, 총장실 항의방문, 언론운동, 공청회, 성명서발표 등

4) 이후 활동

학칙이 제정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학칙이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여학단위의 투쟁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외의 성폭력 근절활동은 지속적으로 벌여가야 한다.

연대의 모색

성폭력 학칙 제정에 대한 여성단체와의 연대, 학간연대 등은 학칙제정의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하며 전체 여성운동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데서 그 의의가 크다.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세미나, 공청회 등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학칙의 제정에서부터 운영에까지 여성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학교측과의 투쟁

학교는 성폭력 학칙 제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성폭력 학칙제정은 이제 일반적 흐름이며 대학 종합평가제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칙제정안을 학우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고 교묘하게 수정해서 학칙제정안으로 내어놓는다. 경상대의 경우는 대상에 교수와 교직원을 포함하는 문제와 성폭력상담소의 설치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부산대의 학칙제정안도 문제가 많다. 총여는 이러한 학교측의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학칙이 제정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제정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법이란 것은 그 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얼마나 내

실있게 꾸려졌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측의 수정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합의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내던져야 한다(실제로 던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럴때는 학우들과 합의된 총여학생회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시기의 투쟁을 지지부진하게 끌면 결국 흐지부지 된다는 것이다.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승리의 핵심이다.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은 그것이 제정되었던 1994년 당시부터 예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를 혼란시키는 심각한 범죄이자 사회문제이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드러내어 해결하려고 하는 피해자는 거의 없었다. 특히 형법에 산재되어 있는 법 조항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법 절차상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 번, 세 번의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법적, 제도적인 현실이었다.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었지만 이 개정안은 또 한번의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여성계가 중점을 두고 전의했던 핵심사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 개정된 주요내용

1)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가중처벌, 친고죄 폐지(제8조의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친고죄를 폐지하여 제 3자도 고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별금

에 처해지게 된다. 이 조항의 신설은 미성년자 대상의 성폭력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2)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확장(제7조)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에서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확장하고 친족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 시키는 조항을 신설하여 비속의 친척과 의붓아버지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존속 등 연장의 친족을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개정하여 연하에 의한 친족 성폭력도 처벌받게 된다.

3) 장애인의 범위를 정신장애까지 확대(제8조)

개정 전의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장애인의 범위를 신체장애에만 한정시켜 정신장애인 경우에는 피해를 입고도 피해자를 제대로 처벌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의 피해도 가중처벌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4)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동석 가능(제22조 2)

신설된 조항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이면서도 우리 사회의 순결관이나 피해자 유발론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수사분위기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18세 미만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에 신고의무화(제22조 3)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계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이나 별칙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6) 증거보전의 특례조항 신설(제22조 4)

피해자가 재판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보호절차를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7)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벌칙규정 신설(제21조)

성폭력 범죄의 조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의 신설로 성폭력 피해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피해자가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한층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2. 재개정을 해야 할 부분

성폭력을 사회적인 범죄로 규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폭력에 대한 정의다. 성폭력 특별법에 성폭력에 대한 개념은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순결과, 피해자 유발론, 피해자

저항여부 증명 등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사건노출이나 신분노출을 꺼리므로 문제를 드러내어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폭력의 개념을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죄'로 정의하여 성폭력을 원하지 않는 인간의 성을 침해한 폭력의 의미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반드시 고소를 해야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는 '친고죄'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기피하게 된다.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성폭력을 사회적인 범죄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가두어두게 만든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범죄에 대해 피해 당사자만이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성희롱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여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 보이는 성희롱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격리시킬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듯 아직도 성폭력 특별법은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2장 성폭족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 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조 악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악취, 유인, 매매등), 제292조(악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악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악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과 제

- 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 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사), 제301조의 2(강간 등 살인, 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

②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특수강간등)

- ①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0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 ④ 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힘겨울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 ①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힘겨울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8조의2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 ① 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9조 (강간등 상해, 치상)

- ① 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살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살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 (강간등 살인, 치사)

- ① 제5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5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 297조(강간) 내지 제 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6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 ①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미수범)

제5조 내지 제1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고소)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 (보호관찰등)

-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이상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형의 집행중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하기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법을 준용한다.

제17조 (보호감호)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의 죄는 사회보호법 제5조(보호감호)의 별표에 규정된 죄로 본다.

제18조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19조 (고소기간)

- ① 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질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 제9조(소송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는 특정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 ① 성폭력범죄의 조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음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심리의 비공개)

-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 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이의의 장소에서의 신문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④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등의 동석)

- ① 법원은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및 제12조(제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에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3 (신고의무)

18세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계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사)및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4 (증거보전의 특례)

-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청구와 그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장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제23조 (상담소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지방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신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3. 피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보상청구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일

제25조 (보호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기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24조 각호의 일
2.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3.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4.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27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유지 또는 폐지)

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유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감독)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 (허가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제3항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30조 (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 (비밀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 (의료보호)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를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폭력피해의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제34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임할 수 있다.

제4장 벌 칙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21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업무를 위반한 자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제36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체없이 관찰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찰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납부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내 성폭력 피해 상담

1. 상담의 목표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그 피해자가 자신의 실수나 책임이 아니라 남녀 불평등 구조의 왜곡된 성인식과 사제간의 권력구조에 의한 여성인권에 대한 폭력임을 인식하게 하여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학업생활을 영위케 하며 여성의 능력을 충분히 활성, 촉진할 수 있게 도와주며 학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학내에서 성폭력을 추방하는데 그 목표를 가진다.

2. 상담활동의 역할과 방법

전통적 상담에서는 문제 발생 후 진단, 치료하는 소극적 모형이 많았으나 발달적 모형에서는 개인의 발달과업과 성취에 도움이 되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서 사전에 문제발생을 예방하는 동시에 대다수의 정상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힘으로 보다 나은 성장발달을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상담활동의 역할은

1) 개인상담

면접, 서신, 전화를 통해 신고접수, 의료적 법률적 자문, 심리 상담을 한다.

2) 집단상담

피해자 집단상담, 의식화 그룹(CPR), 피해자 부모 프로그램, 피해자 파트너 프로그램 등 집단 안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자신들이 경험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서로 나눔. 집단작업을 통해 분노표출, 느낌의 공유로 이질감 고립감 해소, 서로간의 이해와 지지로 자기비하감, 죄책감 해소, 자기노출, 자기표현, 자기주장, 자기이해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태도의 변화, 정체감의 회복,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3) 교육 훈련 프로그램

무지, 두려움, 회피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변화를 창출하도록 돋고 그 변화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돋는다.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학강좌, 남녀평등교육, 자기주장, 자기표현 훈련프로그램, 호신술 방어교육 등을 주제로 강좌를 상설하거나 신입생, 남녀학생, 교수, 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강연회, 공청회를 제공한다.

4) 조정과 규제

학내성폭력의 기준, 범위, 징계방법 등 제재정책을 수립하여 학칙에 처벌규정과 징계회부권한, 보상조치의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인/피신고인에 대한 비공식적 조정, 공식적 조정 등을 협의, 결정 추진하며 학교당국에 처리를 요청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5) 지원 후속처리

의료적, 법적 절차에서의 연계 지원활동, 보상조치, 징계조치의 이행 결과확인, 학내 시설구비 강화(산부인과, 정신과병원, 상담전문가, 경찰, 변호사 연계, 경비강화, 가로등 설치 등의 확보, 서버버스 야간운행, 회장실 보수 등), 지침서 발간, 예방포스터 부착, 학내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남녀차별의 구조의 변화 유도, 여론화 작업

3. 성폭력 피해 일반적 후유증

1) 정서적 증상

피해장소, 남성, 성에 대한 공포, 불안, 분노, 적개심, 공격성, 부자연스러움, 죄의식, 순결 상실감, 자아존상감, 수치감, 허무감, 피로감, 탈진, 과민반응, 우울증, 불면증, 수면장애, 악몽, 섭식장애, 비탄, 성욕의 결핍, 퇴행, 열등감, 자기혐오감, 비통합적 자아정체감, 분열증, 피학대음란증, 살인 및 대인성 폭력, 자살충동.

2) 신체적 증상

두통, 피로감, 위통, 메스꺼움, 강박적으로 씻기, 질파열, 가려움증, 오도동통, 일반적 통증, 출혈, 임신, 성병, 낙태후유증, 병적 식용과 단(비만), 식욕감퇴(거식증)

3) 행동상의 변화

과도한 성적 호기심, 자위행위 증가, 부적합한 성적행위, 불감증, 성관계에서의 불만족, 성관계기피, 배우자와의 불화, 이성교제, 결혼기피, 대인기피, 친밀한 관계형성에 지장, 사회적 고립, 학습장애, 무단결석, 학업포기, 악물의존 및 중독 알콜중독, 실어증, 학업, 직장 가사, 자녀양육 수행의 어려움, 일상생활에의 불안, 원치않는 결혼, 가해자와의 결혼, 치료비 등 재정상의 손실, 가출, 윤락가 유입, 비행 청소년, 가족관계파괴, 이혼, 구타

4. 학내 성폭력 후유증의 특성

1) 교수 제자간의 권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 예능계, 도제관계에서 많이 발생.

: 수강취소, 진로포기, 무력감, 분노 불쾌.

2) 동료, 선후배, 데이트, 교제 등에 이루어질 때

: 생활환경적 분위기, 잘못된 성인식에 기인, 공공모임, 동아리모임에서의 음담패설, 성적접촉, 데이트강요, 강제 성행위 음란가요, 음란컴퓨터, 거짓소문 등
: 동아리 탈퇴, 휴학, 자퇴, 혼돈, 자책감…

3)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때

: 고의적, 의도적,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도서관, 화장실 등에서의 성폭력
: 공포, 불안, 행동반경 축소, 불신
: 직장내 성폭행, 데이트 성폭행의 특성과 비슷
: 정신적고통+신체적 고통(가슴 뛴다, 식은땀, 불면증, 두통, 알레르기, 노이로제 등)

5. 상담자의 입장과 태도

1) 상담원리

상담이란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문제해결과 성장을 돋는 전문기술을 가진 상담자와의 만남의 과정이다.

2) 상담과정

● 문제의 제시와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의 배경과 관계요인을 토의하여 내담자의 내면적, 비언어적 감정을 파악한다.

● 촉진적 관계를 형성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내담자의 감정을 거의 같은 내용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표현한다.

- 목표설정과 구조화

상담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조화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한계를 설명한다.

- 문제해결의 노력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자각과 합리적 사고의 촉진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조망을 할 수 있게 한다.

- 실재행동의 계획

실제생활에서 실행되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동절차를 협의하고 계획을 작성한다.

- 상담결과의 검토와 종결

그 동안 성취한 것, 변화한 것을 검토, 요약, 평가한다.

3) 성폭력 상담의 특성

- 위기 상담의 성격이 강하다.

- 성문제 상담의 성격이 강하다.

- 즉시 문제를 해결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료적, 법적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 성폭력 상담의 내담자는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내담자 자신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게 되는 죄의식과 수치심을 느끼고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인간관계나 자아개념 등에 오랫동안 심리적 상처를 주기 쉽다. 그러므로 성폭력 상담은 피해자 중심상담, 여성중심 상담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

(1) 피해자 중심 상담(내담자 상담)

상담과정을 통해 상황의 탐색, 이해, 문제해결의 단계를 거칠 때 항상 내담자의 요구와 상황을 우선한다.

- 개별화 : 내담자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고 느낌, 욕구와 경험을 지난 한 개인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

상담자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된다.

- 감정에 대한 자유로운 표출 : 피해 여성들이 부정적인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필요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돋고, 비판이나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그 감정에 대한 공감적 반영을 전달해 주어 적극적으로 자극하고 격려해 준다.

- 자기결정 : 내담자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그의 존엄성을 신뢰한다. 그가 힘을 갖출 수 있고 강하고 독립적이 되도록 지원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

- 비밀보장 : 내담자에게 비밀보장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엄수한다. 조정이나 가해자 처벌이나 사례연구시 내담자 본인의 요구와 협력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

(2) 여성중심의 상담

- 위기에 처한 여성들의 요구에 즉각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 피해여성은 상담원과의 따뜻하고 신뢰받는 관계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한다.

상담원은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권력이나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된다.(동등한 관계, 자매애)

- 상담원은 피해여성을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한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한다.

-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 사회적으로 어떠한 맥락에 있는지 이해하도록 돋는다. 성폭력이 그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해하게 하고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부정적, 패배적 감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돋는다(의식화).

- 내담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설명해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안을 톤색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 피해 여성들은 대개 위축되어 있거나 부정적으로 투쟁하려 한다. 이때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자기 느낌과 생각을 건설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장점과 단점을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든 해결방안을 탐색해 보고 그 상황을 하나씩 점검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결과와 위험에 대해 얘기해 본 후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때 책망, 비난섞인 언어 사용을 자제하고 상습적 위로, 무책임한 권고 등을 지양한다.
- 비밀을 지켜줄 것을 알린다. 단 피해여성을 도울 목적으로 한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고서 다른 상담원이나 기관에 의논하도록 한다.

보통 2

공권력에 의한 폭력

한국에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경찰, 전경, 안기부 등의 공권력과 대체공권력인 철거깡패, 구사대 등은 소외계층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억압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져 왔다. 공권력의 본분은 국민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공권력은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여성에게 성폭력을 자행해 온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70-80년대 한국의 민중은 군대와 경찰에 의한 강압으로 상징되었던 군부독재정권 아래 모든 자유를 억압당한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1987년 한국사회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고 곳곳의 민주화 바람으로 1993년에는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문민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문민정부와 군부독재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여성에 대한 공권력의 성폭력 문제만 보더라도 소위 문민정부라는 정권 하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고,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도 그 책임을 지려하지도 않고 있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현황(1984~현재)

● 청량리 경찰서 여대생 성폭력 사건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1984년 청량리 경찰서 여대생 성추행 사건이다.

1984년 11월 경찰은 시위를 하다 연행된 여대생들을 청량리 경찰서로 압송하였다. 경찰은 한 응큼씩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의 매질과 워커발로 짓밟기, 나체로 기합받기, 유방 주므로기 등 악마적 성폭력을 자행하였다. 그 중에는 생리중인 여학생도 있었다. 이것은 여학생들을 모욕하고 수치심 좌절감, 모멸감을 안겨주어 그녀들이 다시는 데모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하에 자행된 성폭력이었다.

이 사건은 몇몇 여대생의 용기있는 결단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어두운 곳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실체가 표면화 된 것이다.

이 사건을 접한 여성단체들은 연대하여 정부를 향한 싸움을 시작하였다. 여성들은 국회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경찰의 공개사과, 폭행관련자 처벌, 피해여학생들에 대한 협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싸웠다.

결국 이싸움은 결국 거듭되는 경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인해 피해 여학생들이 투쟁의욕을 상실하면서 중단되었고, 여성단체 또한 더 이상 싸움을 계속할 수 없었다.

비록 싸움이 중도에 그쳐버리기는 했으나, 이 사건을 통해 여성들은 독재정권의 반여성적이고 반도덕적인 행태를 직접겪는 계기가 되었고, 민주화 운동에 더욱 참여하게 되었다.

● 부천서 성고문 사건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잔인성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것은 86년의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었다.

1986년 6월 권인숙씨는 학생운동을 하다 제적된 후 노동현장에 위치취업하여 노동운동을 하던 중 부천 경찰서에 체포되었다. 당시에 많은 학생운동 관련자들은 시위와 경찰 검거경력으로 인해 블랙리스트에 올리있었고, 이로 인해 취직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노동현장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았고, 권인숙씨 또한 그 중의 하나였다.

권인숙을 체포한 부천경찰서에서는 그녀를 취조실로 데려가 고문담당경찰관인 문귀동 형사에게 취조를 맡겼다. 노동운동을 하는 동료의 행방을 자백하라는 강요에 응하지 않자 형사 문귀동은 권인숙의 옷을 벗겨 나체로 만든 다음 짐승만도 못한 성고문을 자행하였다.

당시 여성들은 본인이 당한 성폭력에 대해 대중 앞에 떳떳이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감옥에 있던 권인숙은 용기있는 결단으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당한 성고문 사건을 언론과 여성단체에 알려 내었다.

한국의 많은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고 가해자 문귀동을 처벌하기 위하여 대책위를 구성하였다. 정부의 진상조사와 형사 문귀동의 처벌을 촉구하며 여성단체들은 거리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난 뒤에도 문귀동에 대한 처벌은커녕 피해자인 권인숙을 공문서 위조죄로 체포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처사에 더욱 분노한 여성단체들의 투쟁은 더욱 격렬해졌다.

이 사건은 두 개의 공동연대기구를 탄생시켰는데, 하나는 여성단체들간의 연대기구인 '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였고, 또 다른 하나는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종교단체등이 망라된 연대기구인 '부천서 성고문사건 공동대책위'였다. 이 두기구는 결성과 함께 권인숙의 석방과 형사 문귀동의 처벌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였다. 성고문사건에 대한 분노는 전 국민들에게 퍼져나갔고, 거의 매일 성고문, 용공조작, 폭력정권 규탄대회가 열렸다. 변호사 166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석하여 공개재판을 요구하였고, 많은 여성들이 재판장으로 몰려드는 등 독재정권 하에서 보기 드문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인 권인숙 씨는 풀려나고 가해자인 문귀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사독재정권의 반 인륜성과 야만성이 전국민에게 폭력 되었고, 87년 민주화 투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 대구 대현동 강정순씨 사건

1988년 12월 5일 대구시 대현동 파출소내에서 경찰관 2명이 한 여인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윤간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인 강정순씨가 다방 여종업원이었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인 강정순씨를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였다. 공정한 수사를 해야할 검찰은 가해자인 경찰을 도와 증거은폐, 조작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인 강정순씨를 간통죄와 무고죄로 구속하였다. 결국 강정순씨는 무죄로 풀려났다. 그러나 가해자인 두 경찰은 끝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 96년 연대항쟁에서 진압과정시 경찰에 의한 성추행

권력이 자행한 성폭력이 의미하는 바 이번 연세대 과잉진압사태에서 자행된 경찰의 시위학생 인권유린의 상황을 살펴보면 모든 법 절차를 무시한 불법 연행속에서 고개 숙이게 하고 무릎꿇리고 오리걸음하게 하고 폭력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집단 구타하는 등 보복성 짙은 폭력 연행의 양상을 띠었다.

마치 전쟁시 승리해 얻은 전리품 다루듯, 여학생들에게 행해진 상식이하의 성폭력은 언어폭행, 신체접촉,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이상의 정도를 넘은 경우도 충분히 예상된다. 경찰서에서의 조작, 협박, 고문은 짜맞추기식 졸속수사를 어설히 보여주었으며 정부와 언론에 의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인권유린에 항의할 수 없게 만들고 가해집단은 상부에 의한 둑인 및 방조를 배경으로 (한 예로 국정감사 자리에서의 폭로한 국회의원의 품위문제만을 지적하여 품위 잃은 현실을 외면하는 자태를 보이는가 하면 국정조사 발동을 거부한

행태는 진상을 알고싶지 않다는 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인하고 있는 실태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여성을 벌주고, 협박하고 모욕하고 비하시키는 폭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너희는 북한에 가서 김정일 기쁨조나 해라” “이 씨발년들아. 그 년들 털 참 많게 생겼다.”

“이형사 오늘밤 수청들게 한 명 골라보지 그래” “이 창녀만도 못한 년아. 너 몇놈하고 해봤느냐”

“밀을 도려내겠다”는 식, 또한 가슴을 쥐어뜯고 음부를 움켜쥐는 등 여성들을 성적대상, 도구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인격이나 존엄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은 예당초 생각도 못하는 천박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성적행위라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모욕감과 상실감을 즘으로써 만족을 얻는 공격적 행위이다. 또한 남성의 정력과 폭력과의 문화적, 사회적 힘수관계를 떠며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사태가 발생할 시 성폭력은 자행된다. 예를 들어 여성이 정치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거나 저항운동이나 선전에 참가함으로써 남성 중심적 체제에 위협을 안겨준다고 볼 경우에 여성이 성의 경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성적 처벌의 형태로 성폭력을 당한다. 대다수의 여학우들이 들었던 언어폭행의 유형을 살펴보면 “얼굴도 못생긴게 웬 데모질이냐”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왜 그런데나 다니고 그러니까” 등 여자들은 정치적 사회적 활동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가정을 지키는 것이 여자의 자리인데 웬 이탈(?)이나는 식의 여성들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의식마저도 막으려는 사고를 엿볼 수 있었다.

78년 부산 서부 경찰서 여공 윤간 사건, 81년 구로 경찰서 이은숙씨 사건, 84년 청담 파출소 윤 모양 성추행 사건, 86년 태릉 경찰서 강제추행 사건, 88년 성남 경찰서 김 모양 성폭행 사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강 정순씨 사건과 권 인숙씨 사건 등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의 방식 또한 여전하다. 운동권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성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한 다던(당시 저들의 궁색한 변명, 그 당시 권인숙이라는 주체가 있었기에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공권력의 추악성과 잔인성을 확인한 바 있다) 86년 권인숙씨 사건처럼 지금도 역시 한총련이 고의적으로 유언비어를 퍼트린다면 발뺌하기에 급급하고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허위주장이라며 오히려 용기있게 피해사실을 증언한 학우를 다시 한 번 분노에 치繇(?) 했다.

[연대항쟁 진압과정 성폭력의 구체적 실례]

연세대 8.15 통일행사를 둘러싸고 경찰의 연행과정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성추행이 있었음을 성신여대 2학년 조모학우의 폭로

▶폭로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을텐데..

물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라. 용기가 필요하고 부담도 되었다. 처음엔 떨리기만 하고 생각하기도 싫어 혼자서 가슴앓이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연대에 있었던 친구들과 말하는 과정에서 나 혼자만 당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짐승적이고 야만적인 추행이 연대에서 연행되는 도중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당하고도 수치심으로 침묵만 지키고 있다면 또다시 악순환 될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라 누구든 용기를 내어 사실을 폭로해야 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지금도 가슴 언저리에 남은 일은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다. 당신의 딸이 야만적인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순간 어떻게 되실지...

▶당시 상황을 있는데로 말해줄 수 있는가?

20일(화) 새벽 연세대 종합관에 있었다. 여기저기 검은 연기, 최루탄 등으로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옥상으로 올라가라는 방송을 들었는데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 옥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램실 탁자 밑에 숨어 있었다.

연행되는 과정에서 곤봉으로 머리, 팔, 다리 등을 설새없이 두들겨맞고 군홧발로 밟혔다. 머리채를 잡히는 건 예사였고 너무 맞아서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내려오는데… 한쪽에 백골단이 죽 서 있었다. “여자도 있었어… 여자라고 봐줄줄 알아 이 미친 년… 너같은 년은 당해야해, 죽어도 싸.” 갖은 욕을 다들었다. 여기 저기서 쏟아지는 욕설에 아픈줄도 몰랐다.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내몸을 여기저기 만지는 것이 느껴졌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미안하지만 좀더 자세히 말해 줄 수 없겠나?

수많은 손들이 허리를 만지고 엉덩이를 쓰다듬고… 심지어 가슴을 꼬집었다. 너무 아프고 화도 나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가슴을 계속 꼬집혔다. 너무 당해 나중에 때리는 건지 가슴을 꼬집는 건지 분간조차 할수 없었다. 내리 당했으니까. 태어나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모욕적인 욕설들과 함께…

▶사실인가, 반항은 했나…

사실이다. 경찰서에서 진술서에 연행과정에서 내가 당한 일을 있는 그대로 썼다. 물론 조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반항… 할 수 없었다… ‘이럴수가 이럴 수가…내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이외엔 입도 떨어지지 않았다. 건물밖으로 나오고 나서도 계속됐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나를 부축하고 있던 백골단이 “그만하라고. 위에서 많이 맞고 당했다”라며 말려줬다. 그 말이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났다.

▶종합관에서 연행된 이후에 다른일은 없었나?

닭장차안에서 내가 때리지 말라고 했더니 한 전경이 “개속 떠들면 내 X으로 때린다. 이 미친년아!”라는 언어적인 성폭력을 서슴없이 했다. 기가 막힌건 “야, 네 X이 그렇게 커?”하면서 자기들끼리 웃기까지 했다.” 사수대에게 몇번 대주었나, 정명기의 기쁨조나…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심정을 말한다면…

내가 왜 추잡하고 더러운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마구 잡이로 당해야만 할만큼 인간이 아닌가… 짐승도 아닌 사람에게 이럴수는 없다. 이럴 일을 너무도 당연히 자행하는 그들은 여동생도 없고 자식도 없는지… 모르겠다. 가끔 그 악몽을 다시꾼다. 처음엔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 다시 그 악몽이 되살아 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내가 직접 그 일을 당했고 함께 있던 여학생들 대다수가 짐승적인 모욕을 받았다. 더이상 일어나서는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라는 생각뿐이다.

▶부모님과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런 식의 악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연행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용기를 내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연행과정에서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들었다. 주변의 친구들도 성추행을 당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연대에서 사망한 김종희 이경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

연대에 있으면서 젊은이들끼리 다시 돌을 던지고 최루탄을 쏘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아팠다.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조모학우 외에도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학생들의 사례는 속속 접수되고 있다. 진압당시 종합관에서 연행된 학생들은 남학생과 여학생들을 나누어 놓은후 경찰들은 “너같은 년들은 김정일의 기쁨조나 해라. 북에 가서 창녀짓이나 해라”등의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어 공포분위기 그 자체였다고 한다. 그리고 끌려내려와 교실에 있는데 여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다면 음담패설을 늘어놓았으며 여학생들이 이동하는 과정속에서 손을 머리위에 올리게 하고 줄을 지어 내려가게 하면서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예사였다. 여기저기서 울분을 터뜨리는 여학생들의 울먹이는 목소리와 비명이 들렸고 그럴때마다 심한 욕설과 매가 이어졌다고 증언한다.

특히 여학생들을 창녀라고 부르기를 서슴치 않고 지날때마다 가슴을 만져대며 웃는 전경과 울분하던 등료 여학생들의 얼굴이 떠올라 며칠째 밥도 못먹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증언자도 나타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과대에서 탈출 도중 연행된 한 여학우는 “키는 조그만게 가슴들은 무척 크네. 야 저것좀 봐… 가슴들은 엄청 크잖아.”라는 말들을 서슴없이 해댔다고 폭로한다. 한 기자에 의하면 끌려나오는 여학생들을 향해 전경들이 진압봉 등으로 상의 티를 들춰올리기도 했었다고 한다.

또한 강남 경찰서에 있었다는 한 여학우는 밤 12시경 경찰들이 여학생들이 갇혀있던 곳에 와 “오늘밤에 네 수청들 여자를 골르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반바지등 짧은 옷을 입은 여학생들에게 전경앞에서 눈을 감고 다리를 벌리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말했다,

● 병원노련 압수수색 과정 경찰 성추행

96년 1월 경찰이 서울 중구 회현동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기칭)노동자영상사업단 회원 김아무개(31·여)씨를 성추행하고, 여성 노조원들에게 폭언을 했다

김씨에 따르면,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는데 남대문경찰서(서장 전윤기) ㄱ아무개(57) 경사가 다가와 렌즈에 얼굴을 댔다가 땎 뒤, “참 귀엽군”이라며 자신의 왼쪽 뺨을 귀쪽에서 얼굴 앞쪽으로 어루만지듯 쓰다듬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 경찰관에게 항의하자 웃으면서 다시 엉덩이 가운데를 스치듯이 만졌다”고 한다.

ㄱ 경사는 김씨가 다시 항의하자 “아가씨가 귀엽고 딸 같아서 그런 건 데 뭘 그러나”며 당황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다고 김씨는 밝혔다. ㄱ 경사는 이런 추행 바로 전에도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보러 온 권아무개(26)씨 등 서울대병원 여성 노조원 3명에게도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이 경찰관이 수색과정을 지켜보던 노조원들에게 ‘아가씨 그렇게 못생겨서 어떻게 시집 가겠느냐’는 따위의 폭언을 했다”고 한다. 병원노련은 “경찰의 수긍할 만한 해명과 책임 있는 사과가 없을 경우 고소·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압수수색을 현장지휘한 김정호 남대문서 수사과장은 “ㄱ 경사가 찍지 말리는 뜻으로 카메라를 밀치다 손이 김씨의 뺨에 닿은 것이지,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ㄱ 경사가 노조원에게 폭언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남대문서 사복경찰관 15명은 병원노련 사무실을 뒤졌으며, 노조원 30여명이 이 과정을 지켜봤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내어 승소하였다. 이것은 매우 뜻깊은 결과이며 그 동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이 거의 기소조차 되지 못한 채 중단된 점을 볼 때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더 이상 자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전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 그 밖의 사건들

이외에도 78년 7월 17일 부산시 서부경찰서의 경찰과 병법대원이 몸수색을 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노동자를 목욕탕으로 끌고가 윤간하고 일방적 조서를 작성, 날인한 후 구속시킨 사건, 84년 2월 24일 서울 청담 파출소에서 있었던 김모양 성추행 사건 등 너무나 많은 크고 작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존재해 왔다.

최근에도 이러한 공권력의 만행은 계속되고 있다.

95년 9월 19일 암사동 철거지역에서 강동 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철거대책 부위원장이던 문연희씨를 웃이 벗겨진 체로 차에 태워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 이유를 물으며 차에 오르길 거부하는 문연희씨를 “여자들은 웃을 벗겨야 말을 잘 듣는다.”며 강제로 웃을 벗겨 차에 태웠다.

또한 95년 10월 4일 새벽 번 3동 철거현장에서 종암 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한 여대생의 웃을 벗겨 나체로 만든 뒤 수갑을 채워 50미터 정도 끌고갔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항의하자 총기를 난사하기까지 하였다.

● 주한미군에 의한 폭력 에바다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

나이 어린 농아 학생들이 배가 고파 동네 가게의 빵을 훔쳐먹고 개밥그릇에 담긴 라면을 주워 먹는곳. 재활이라는 명분아래 강제노역을 시키고 그 임금마저 횡령하는 학교. 바로 이땅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경기도 폭력 에바다 농아원. 이곳은 농아원생들의 피맺힌 한들이 멍울져 얼룩진 곳이다. 에바다 농아원 최성창 이사장과 그 일가는 에바다 특수학교와 농아원, 복지관의 각종직책을 모두 친인척의 이름으로 올려 공금을 횡령했다. 졸업한 학생이나 사망한 학생을 정리하지 않고 농아학생들의 주민등록증을 이중으로 만들어 일년에 13억이 넘는 지원금을 빼돌렸다. 농아자 70여명을 강제로 해외 입양시

커 대가를 치복 하였다. 96년 11월 27일 강제노동과 학대에 견디다 못한 농아원 학생들은 최성창 이사장의 퇴진과 시설 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하였다.

12월 원생들이 집회를 주도하던 어느 날 농아원 직원이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가로막으며 한 학생에게 “넌 에이즈검사부터 해봐야 한다. 미군때문에 병원 다녀온 주제에 어딜 나서나”라고 말하면서 미군의 농아원생 성폭행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미성년자인 이수철(가명, 당시 15세)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윌리엄스 앤 에스필병(33세, 미제7공군 소속)을 따라 송탄에 있는 미군부대로 들어갔다.

이군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농아자였다. 그는 평소 햄버거를 사주며 부대를 구경시켜 주었던 윌리엄스를 따라나섰다. 윌리엄스는 수화를 할 줄 아는데다 마술쇼를 보여주기도 하여 원생들에게 인기있는 미군이었다. 그 날 이군은 부대 내 윌리엄스의 숙소에서 자게 되었다. 이군이 침대에 눕자 잠시 후 윌리엄스는 이군의 속옷을 벗기고 그의 아랫도리를 만지기 시작했다. 이군은 싫다고 저항했으나 덩치가 큰 윌리엄스의 힘을 뿌리치기는 역부족이었다. 이어 윌리엄스는 이군을 강제추행하였다.

20여분 남짓한 시간은 농아자인 이군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 이군의 끔찍한 모욕은 다른 원생에게도 이어졌다. 햄버거를 사주며 자선을 가장한 윌리엄스의 추악함은 지난해 9월 28일 또다시 나타났다. 김민호군(가명, 당시 12세)과 오철식군(가명, 당시 12세)을 같은 방법으로 피어내어 자기 숙소로 데려갔다. 윌리엄스는 어린 농아학생들에게 목욕을 하라고 시켰다. 윌리엄스는 목욕을 하고 있던 아이들에게 다가가 김군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시키고 나서 성폭행하였다. 이어 윌리엄스는 오군을 똑같은 방법으로 짓밟았다. 10월 27일 김군을 다시 불러내어 또다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97년 3월 12일 2시수원지방법원 208호에서 준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윌리엄스 일병의 1차 재판이 열렸다. 윌리엄스는 변호인 신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김군이 나에게 함께 샤워할 것을 제의했으나 거절했다. 그러자 김군이 오군과 함께 샤워를 시작했다. 나는 내가 손님을 소홀히 대접하는 것 같아 그들과 함께 샤워를 했다. 그러자 김군이 계간을 하자고 하였다. 나는 어린 아이들의 말(수화)에 충격을 받았으나 김군의 제의를 허락했다. 그러나 김군이 나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것이지 내가 그들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원생들을 검진했던 송탄의 병원 의사는 <당시 경찰이 원생 2명을 데려와 그들의 항문을 치료해 달라고 하였다. 경찰이 말하기를 이들 원생들이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군의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이 가져 올 사회적 파장과 농아원의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한 부담이 한통속이 되어 사건은 은폐되었다. 경찰은 초기부터 사건이 기사화되는 것에 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 때문이었을까? 이땅의 안보를 위해 주둔하는 미군이 농아학생들을 성폭행한 엄청난 사건은 거의 신문에 게재되지 않는 조직적인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다른 성폭력 사건과 달리 몇 가지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여성의 수치심을 자극하여 다시는 집단적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하에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청량리 여대생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사건, 철거현장에서의 성추행 사건 모두 이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법을 집행한다는 미명아래 자행되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아무런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없이 떳떳하게 성폭력을 자행하고 피해자는 반항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회에 호소하기도 힘들다.

셋째, 경찰이 범죄를 자행하기 때문에 같은 공권력이라 할 수 있는 경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 경찰과 경찰이 한통속이 되어 증거를 은폐하거나 경찰쪽 진술만 일방적으로 채택하여 기소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 처리 또한 힘들다.

1. 데이트 강간(DATE RAPE)이란?

데이트 강간이란 무엇인가?

첫째, 데이트 강간이란 데이트 중 친구 혹은 아는 사람의 강요나 조종에 의해 무리적인 힘이나, 폭력, 협박 등을 사용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다. 둘째, 육체적으로 무력하거나 저항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다. 셋째, 나중에 해를 입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성행위를 요구할 때까지 그러한 위협을 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다. 넷째, 마취제, 술, 최면 등을 이용해 성적인 행동에 대한 자기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후 성관계를 갖는 것이다.

- 광의의 의미 : 데이트 강간은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을 뜻한다.

- 혐의의 의미 : 데이트 강간은 이성간의 데이트에서 일어나는 강간을 뜻한다.

위에서 말한 데이트 강간개념의 부족함을 채워 일반 강간이나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과 확실히 구별되고 우리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보다 정교한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14세 이상의 남녀 쌍방이 이성애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강간”으로 정의 한다. 여기서 14세 이상이라고 한 것은 어린이 성폭력과 구별하기 위한것이고, 이성애의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이는 중에서도 이성애의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로 한정한 것이며 남녀 쌍방의 관계가 부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결혼 내의 강간과도 구분된다.

우리사회에서 데이트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강간은 그들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강간”으로 고소하기 보다는 대개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는 경향이 높다. “간음”은 “강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고소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데이트 강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2. 데이트 강간 발생에 나타나는 경향

1) 친밀도

데이트 강간은 두 사람의 친밀도가 어느 정도 일 때 더 자주 발생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관계가 많이 진전된 절친한 사이보다 가볍게 만나는 사이에서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견해다. 둘째, 데이트 강간은 오래 사귀어온 사이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다.

2) 권력관계

강간이란 남녀간의 불균등한 권리 관계의 결과임을 생각하면 데이트에서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있는가? 누가 데이트를 주도하는가? 누가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는가? 하는 것은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강간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1) 나이차가 나는가?

대학에서 선후배 사이로 만나 교제를 하는 경우 남자는 군복무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남자의 연령이 높다고 임의로 정의를 내렸다. 한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이 일어난 데이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남녀간 나이차가 더 많이 났다. 이는 나이가 더 많은 남성이 더 우월한 교섭력을 지니거나 혹은 두사람 사이의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2) 누가 데이트를 주도하는가?

남성이 데이트를 주도하는 경우, 남성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은 소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데이트를 주도하는 사람인 남성은 데이트 강간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예를 들면 한적한 장소에서 만날 계획을 세운다든지 함으로서 미리 강간을 위한 계

획을 세울 수 있다. 반면 여성이 남성에게 데이트를 청하고 그 과정을 주도했을 때는 그 반대의 경우보다 여성이 성관계의 의사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다.

(3) 누가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는가?

미국문화권에서 돈과 성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돈에 대한 대가로 성을 제공하고 또한 성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매음이 일상화 되어 있고 그것이 전반적인 우리사회 성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우리 문화권에서도 이러한 돈과 성의 상호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

(4) 누가 교통수단을 제공하는가?

데이트에서 남성이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운전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즉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 남성은 자신이 교통수단을 제공했으니 상대방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또한 남성이 운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여성이 자신의 교통 수단이 없는 경우 자신이 원치 않는 장소를 빠져 나오기 어렵게 된다.

3) 의사소통

데이트 중 남녀간에 서로 얼마나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 이는 데이트 강간의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삶의 행동을 특히 여성의 행동을 성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여성보다 더 높다. 이러한 남녀간 의사 차이는 오해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여성은 단지 애무만을 원하는데 남성을 이를 성관계를 위한 전희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만약 여성이 포옹이나 애무 이상의 신체적 접촉을 거부할 경우에도 남성은 이를 여성이 성관계를 정말로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숙해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거부로 받아들인다.

4) 음주

가해자의 1/3이거나 2/3 그리고 많은 강간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술은 폭력에 대한 특히 성폭력에 대한 자제력을 감소시킨다. 만약 가해자인 남성이 술 취한 상태였다면 강간을 합리화 하고 강간에 대한 책임이 적은 것으로 여기는 반면, 피해여성이 술 취한 상태였다면 피해자에게 강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더 높다. 그리고 술은 여성이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즉 음주는 폭력에 대한 남성의 자제력을 감소시키고 강간을 합리화하고, 강간에 대한 여성의 저항력을 감소시킨다.

5) 데이트 장소와 활동

여성이 특정장소 특히 아무도 없는 집 혹은 남성의 아파트나 자취방에 가기를 원할 때, 남성은 이를 여성이 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도 없는 집 혹은 남성의 자취방에 가지고 하는 것은 여성이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외부와 차단된 한적한 장소나 사적 영역은 성적 생각이나 행동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장소에서 데이트 강간이 일어날 가능성 이 더 높은데 이는 다른 사람이 개입하거나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남성의 집에서 데이트 강간이 일어나는 비율이 훨씬 높다. 남성은 자기 자신의 집에서 더 큰 통제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강간을 일으킬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6) 성역할 태도

강간에 대한 신화, 여성에 대한 폭력, 왜곡된 성규범,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는 사람일수록 강간에 대해 관용적이고, 피해자를 더 육비난하며 또한 밝혀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강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태도는 성폭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특히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연관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즉 남성은 그들을 가해자로 여기는 반면(그러나 실제로 모든 남성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은 모두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습에 얼마나 순응하는 태도를 가지는가하는 것도 성폭력과 연관이 있다. 인습적인 태도는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습에 순응하는 사람은 전통적인 성의 각본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다. 전통적인 성의 각본에 의하면 여성은 성에 대한 욕구나 의사를 직접 나타내어서도 안되고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져서도 안된다. 그리고 남성

에게는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할지라도 계속 주도해나가라고 가르친다. 그리하여 강간을 합리화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사람은 남성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높다. 남성답기 위해서는 남보다 우월해지고 남을 정복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남성다움의 신비” 때문에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을 지니고 있는 남성은 강간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전통적인 여성은 친절하고, 침울성 있고 순종적이고 의존적이고 자비로워야 함을 내면화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은 여성이 강간당하기 쉽게 만든다. 전통적인 여성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남성과 데이트하는데 이때 전통적인 여성은 강간을 당할 위험성이 더 높다. 또한 전통적이지 않은 여성도 위험요소를 가진 행동을 함으로써 예를 들면 남성의 집에 간다거나 함으로써 역시 강간당할 위험성을 자znida. 이를 통해서 볼 때 행동거지가 정숙하지 못한 여성만 강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숙한 여성이든 그렇지 않은 여성이든 모두 잠재적인 강간의 피해자이다.

3. 데이트 강간의 올바른 이해

데이트 강간 역시 성폭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아직 ‘데이트 강간’이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성과의 교제시에는 성관계란 당연한 것이며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은 성관계를 용인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성폭력과 같이 이성과의 데이트에서도 성관계는 물론 키스, 포옹, 애무 등의 행위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것은 성폭력임을 알아야 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데이트 강간의 발생경향의 모든 요소에 부합하여 강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범죄행위를 합리화시켜 주지는 못하여 더구나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성폭력 상담기관

한국성폭력 상담소 02 - 529-4271

한국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02 - 263-6464

한국여성의 전화 부산지부 성폭력 상담소 051- 817-4321

부산성폭력 상담소 051- 514-3330

성폭력피해 상담소 051- 628-0830

인천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032- 529-2546

강화성폭력 상담소 032- 934-1900

한국여성의 전화 대구성폭력 상담소 053- 475-8084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성폭력 상담소 062- 363-7739

한국여성의 전화 수원지부 부설성폭력 상담소 0331-32-7780

한국여성의 전화 성남시 지부 부설 성폭력 상담소 0342-730-1118

춘천성폭력 상담소 0361-57-4689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 상담소 0551-244-8400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전주) 0652-87-1658

성폭력사건 신고기관

112,119, 각 경찰서 여성상담실 대표국번 + 1366